2020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농림축산식품부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 http://global.at.or.kr/

** 검색포털에서 "aT수출지원"을 검색하거나 아래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쉽게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 본 가이드북 내용은 '20년 3월 기준 내용이며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합니다.

**** 가이드북 내용은 농식품수출정보사이트(http://www.kati.net)의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Contents

Part 1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01
Part 2	수출품목육성·발굴	05
Part 3	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13
Part 4	통관 및 물류지원	17
Part 5	현지 유통망 개척	29
Part 6	수출 지원 자금융자	45
Part 7	참고	49

-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찾아보기
- aT 지역본부, 해외지사 연락처
- 연도별 농림수산식품 수출현황

Part 1

수출정보 제공 및 컨설팅

01 농수산식품수출정보(KATI) 01p

02 수출컨설팅 02p

03 현지화 지원 03p

01 농수산식품수출정보(KATI)

국내 유일의 농식품 수출정보 전문 서비스로 수출과 관련된 정보를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하여 무료로 제공

지원대상 농수산식품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수출지원기관, 지자체 등 수출정보 수요자

지원분야 시장동향, 무역통계, 수출입제도 등 농식품 수출 관련 각종 수출정보

지원내용

- **기본이용 카테고리**

구분	서비스 내용
뉴스	시장동향, 수출입동향, 무역장벽, 안전성 정보
품목	주요 품목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 제공
국가	주요 국가의 통계, 뉴스, 자료 등 통합 제공
제도	제도통합정보, 비관세장벽, 인증, 첨가물 등
자료	발간자료, 보고서 및 간행물, 스토리뉴스 등
통계	월별, 국가별, 품목별 수출입 통계정보

- **해외시장맞춤조사 :** 개별업체 희망정보를 일대일 맞춤형으로 제공
  - 국가정보 및 시장통계, 시장트렌드, 유통채널 현황 등(일반/심층조사)

이용방법

- **농수산식품수출정보 KATI**
  - 홈페이지 및 모바일 : www.kati.net
  - SNS 채널 : (페이스북) www.facebook.com/2018KATI, (카카오톡 ID) kati
- **해외시장맞춤조사**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추진현황 계획

- 최신 수출정보 One-stop 제공
- 통관문제사례 DB구축 및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 국가별 정보제공 및 중소업체대상 해외시장 맞춤 정보 지원

담당부서

- **KATI 홈페이지 이용**
  aT 수출정보분석부 조민지 대리(061-931-0879)
- **해외시장맞춤조사**
  aT 수출정보분석부 김해나 주임(061-931-0875)

02 수출컨설팅

① 해외진출컨설팅, 현장코칭, FTA특혜관세활용 지원

국내 농식품업체 대상 전문가를 활용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 및 기 수출업체의 신시장 개척을 통한 수출확대 도모

지원대상

국내 농업, 음·식료품 제조·도소매·수출업체(단, 임·수산물 제외)

지원분야·지원내용

구 분	지원분야	지원내용
해외 진출 컨설팅	▶ 컨설팅사–개별기업간 장기간 컨설팅 수행 ① 수출초보기업(수출실적 5만불미만) ② 시장다변화기업(수출실적 5만불이상) * 단, 바이어 발굴은 필수 수행	[장기 8개월 내외] 컨설팅 비용 80% 정부지원 (최대 20백만원 한도) * 단, 연속국가지원시 2년차 70%, 3년차 60%지원으로 차등(타국가는 80%)
현장 코칭	▶ 개별 전문위원–개별기업간 단기간 컨설팅 수행 – 금융/보험,라벨링/포장, 통관검역, 물류효율화,해외마케팅,생산·품질관리, 신상품개발/상품화, 법률상담, 원산지 관리 등	[단기 5일~10일 방문 코칭] • 업체 자부담금 : 10만원 * (예비)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1년 매출 1억원 미만 기업 무료 • 통번역 및 홍보물 제작 : 80% 지원 (2백만원 한도)
FTA 특혜 관세 활용	▶ 업체별 FTA원산지 증명서/확인서 발급대행 전반에 대한 컨설팅 – 관세실익 분석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 거래단계별 원산지 증빙자료작성·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제공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업무 대행 / 지원 ▶ 농식품분야FTA상담 애로창구 운영(수시)	[업체당 3~10일 컨설팅] • 90업체 내외 지원 • FTA종합컨설팅 10회 • FTA디딤돌컨설팅 3회

추진절차

• 해외진출컨설팅

접수 ▶ 컨설팅사 매칭 ▶ 수행계획서 작성 ▶ 현장점검 ▶ 수행계획심의 ▶ 자부담금 납입 ▶ 협약체결 ▶ 컨설팅 착수 ▶ 중간점검 ▶ 컨설팅 완료 ▶ 완료평가 및 만족도 조사 ▶ 사후관리

• 현장코칭

접수 ▶ 업체선정 ▶ 자부담금 납입 ▶ 전문위원 매칭 ▶ 현장코칭 수행 ▶ 완료점검 및 만족도 조사 ▶ 비용정산 및 사후관리

• FTA특혜관세활용

지원사업 신청 ▶ 서류심사 ▶ 컨설팅 추진 ▶ 정산 및 홍보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

담당부서

aT 기업육성부 배재윤 주임(061–931–0864)
윤소라 주임(061–931–0866)

03 현지화 지원

주요 수출국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통관애로 해소 및 국가별 비관세장벽 대응을 통한 농식품 수출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입바이어
* 상호출자제한기업 지원 제외

지원분야·지원내용

- **대상지역 :** 한국 농식품 수출 주요 수출거점 30개국(전문기관 104개소)
  - (동북아) 중화권(중국, 홍콩, 대만), 일본, 몽골
  - (동남아)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인도, 말레이시아
  - (미주) 미국, 캐나다, (유럽) EU,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 (기타) GCC, 이란, 카자흐스탄, 터키,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호주
- **지원방법 :** 각국 현지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통한 지원 추진
- **지원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주요 내용		한도	자부담	대상
비관세장벽해소자문	• 현지법률 · 제도(계약, 관세, SPS 등) 관련 애로 해소		10	–	수출업체 바이어
	지원분야	지원(자문) 내용			
	법률일반	계약서 법률검토, 현지법인 설립, 현지 노무법률 등			
	통관	수입가능 여부, 성분비율 등 통관검토, 관세 등 부가세 일반			
	SPS	식품 관련법령, 위생기준 조회 등			
	기타	기타 현지 비즈니스			
라벨링지원	• 수출상품 현지어 라벨링 제작(등록) 지원 • 라벨 제작에 필요한 성분 검사		20	10%	
상표권출원지원	•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 보호를 위한 상표권 출원 대행		20	10%	수출업체
포장패키지현지화	• 현지 트렌드에 맞는 포장디자인 개선 및 패키지 개발 지원		20	10%	바이어
바이어특화지원	• 바이어 코칭 및 컨설팅 (美 FSVP 등) • 신규 수입식품 등록비(갱신비) • 현지 식품 검사비 등		20	10%	
수입경보해제컨설팅	• 미국 Import Alert Red List 해제 컨설팅		20	10%	
One-stop 시험수출지원	• 대 중국·일본·베트남 시험수출 물량 통관 사전준비, 통관·검역, 물류·보관, 마케팅 등 제반사항 지원		10	10%	수출업체

*현지여건에 따라 서비스 내용 중 일부는 지역별로 제한될 수 있음
*정기간의 연구 분석이나 심층 컨설팅을 요하는 사항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포장패키지, 바이어특화, 수입경보해제 항목은 수출업체가 아닌 해외 바이어만을 대상으로 함

이용방법

- **지원기간 :** 3~11월(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모집공고 :** aT 홈페이지(at.or.kr), kati.net, global.at.or.kr
- **신청방법 :**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사업안내 → 현지화지원사업 (모집공고 : aT홈페이지(at.or.kr), kati.net, global.at.or.kr) * 신청 매뉴얼 참고

담당부서

- (농식품) aT 수출정보분석부 이지재 차장, 김가령 주임 (hjh@at.or.kr, 061-931-0872)
- (수 산) aT 수산임산수출부 김지훈 대리, 이승연 주임 (061-931-0853~4)

Part 2

수출품목육성·발굴

04 수출통합조직 육성 05p
05 수출선도조직 기반육성 06p
06 수출상품화 지원 07p
07 글로벌 브랜드 육성지원 09p
08 농식품수출바우처사업 10p

04 수출통합조직 육성

신선농산물의 품목별 특성을 고려한 전국단위 수출농가와 수출업체가 참여하는 단계적 수출통합조직 육성 지원

지원대상

- 신선농산물 수출마케팅 창구를 단일화한 수출통합조직
  - 수출통합조직 중심의 지원을 통해 수출협의회 및 선도조직 등의 수출통합조직화 지속 유도 ('18 지정 : 파프리카, 버섯, 딸기 / '19 지정 : 포도, 절화류)

신청요건

-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 생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 있는 출하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품목 국가전체 수출비중이 ⅔이상이며, 수출물량 및 가격·품질 등을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지원내용

- **기반육성사업비(20%자부담) :** 배정액 × 평가백분율 (득점율)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출통합조직			
품목조직별 수출규모	기반육성사업비(수출비중별)			
	~⅔(67%)	⅔~75%	75~90%	90%~
3천만불초과	80	200	400	800
1천만불초과	70	100	250	400
1천만불이하	50	80	150	250

- **수출활성화인센티브 :** 수출물류비 추가

구분	수출통합조직		
	일반	우수	최우수
수출활성화	8%	10%	12%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위생관리 관련 비용 추가 정산 가능
- 작업장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용 소독액 구입 비용 등

- **수출안정화인센티브 :** 수출물류비 추가(수출통합조직 지정 후 만1년 이내 신규조직)
  - (2020년 신설) : 조직당 300백만원

진행절차

- **절차 :** 수출통합조직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 운영관리, 약정서 등은 「2020년 농식품 수출통합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고

- **모집시기 :** 연중(~2020.11.13.(금)까지)

* aT 홈페이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KATI에서 조회 가능

담당부서

aT 농산수출부 조종연 차장(061-931-0832)
장유진 대리(061-931-0835)

05 수출선도조직 기반육성

고품질 농식품의 안정적 수출물량공급을 위해 생산에서 수출까지 일관하는 품목별 선도조직 육성 지원

지원대상 수출 신선농산물을 생산하는 선도조직(개별, 연합)

신청요건
- 생산자(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수출업체가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수출 전문 통합마케팅 법인
  - 생산자, 농산물전문생산단지와 구속력 있는 출하약정 계약을 체결한 수출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연합조직

지원내용
- **기반육성사업비(20%자부담) :** 배정액 × 평가백분율(득점율)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출통합조직			
품목조직별 수출규모	기반육성사업비(수출비중별)			
	~⅔(67%)	⅔~75%	75~90%	90%~
3천만불초과	70	90	150	200
1천만불초과	60	80	100	120
1천만불이하	40	60	80	100

- **수출활성화인센티브 :** 수출물류비 추가

구분	수출선도조직					
	개별			연합		
	일반	우수	최우수	일반	우수	최우수
수출활성화	2%	3%	4%	3%	5%	6%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위생관리 관련 비용 추가 정산 가능
  - 작업장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용 소독액 구입 비용 등

진행절차
- **절차 :** 수출선도조직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승인
  - 운영관리, 약정서 등은 「2020년 농식품 수출선도조직 육성사업 운영지침」 참고
- **모집시기 :** 연중(~2020.11.13.(금)까지)

* aT 홈페이지,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KATI에서 조회 가능

신청방법

신청서작성·제출(aT) ▶ 신청업체 평가(서면, 현장실사 등 / 수출선도조직 운영위원회)

▶ 수출선도조직 선정(aT)·승인(농식품부) 통보 ▶ 사업추진

* 오프라인·이메일 접수(tithonus77@at.or.kr 조종연 차장)
(803yujin@at.or.kr 장유진 대리)

담당부서 aT 농산수출부 조종연 차장(061-931-0832)
장유진 대리(061-931-0835)

06 수출상품화 지원

① 상품화 지원

현지 트렌드에 부합하는 상품개발·개선을 통해 한국 농식품 수출 확대

지원대상 신선 농축산물,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유망상품개발 및 해외마케팅 등 제품 현지정착 관련 비용

-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역	비고
1단계	▪ 상품개발·개선 및 마켓 테스트비용 –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40백만원	–
2단계	▪ 해외시장진입상품의 해외 마케팅비용 – 지원비율 : 80%, 지원한도 : 60백만원	※ 2019년 상품화사업 1단계 수행업체만 지원가능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지원제외

선정기준

- 서류전형 → 계량평가(1.5배수) → 상품성·수출업체평가 및 공개발표평가 → 최종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정성 검토

- **계량평가(100점) :** 계량항목 평가를 통해 비계량 평가 대상업체 선정

- **상품성 및 수출업체 평가(비계량, 20점) :** 해외지사 평가

- **공개발표평가(비계량, 80점) :**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PT발표평가

진행절차 모집공고(1월) ▶ 업체선정(2월) ▶ 사업 약정체결(3월) ▶ 사업추진 및 점검·정산(연중) ▶ 최종정산 및 평가(12월)

모집시기 매년 1월 경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수출지원사업신청 → 수출상품화지원사업 지원 신청

담당부서 aT 식품수출부 원소현 주임 (061-931-0748)

06 수출상품화 지원

② UN조달시장 진출 지원

UN 및 해외 조달시장 내 식품 및 연관 산업류 진출 지원으로 수출 활로 확대

지원대상

식품 및 농기자재 제품의 국제조달시장 진출을 계획하는 제조업체 및 관련협회, 제조업체와 컨소시엄으로 협의체를 구성한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품목

– 신규개발 상품 : 조달시장의 기존 주력 품목을 한국의 가공기술을 접목하여 신규 개발, 기존 주력 품목을 대체할 목표로 개발 가능한 품목

* 예시 : 분말식 이유식, 영양강화쌀, 영양죽, 영양에너지바(블럭) 등

– 일반상품 : 수출을 하고 있거나, 내수 상품으로 성분이나 기능 변경 없이, 국제 조달 시장으로 바로 진출이 가능한 품목

* 예시 : (식품) 설탕, 분유, 에너지바 등 (농산업) 종자, 농약, 농기계 등

• 지원항목

구분	지원한도	지원비율	지원항목
신규 상품 개발	【1단계/상품개발】 100백만원	100%	제품개발, 인증취득, 상품제안, 시제품제작 비용
	【2단계/컨설팅】 15백만원	100%	벤더등록, 입찰참가, 수출상담회 참가 등
일반 상품 진출 지원	【1단계/컨설팅】 15백만원	100%	교육참가, 벤더등록, 상품제안서 작성 입찰등록, 수출상담회 참가 등
	【2단계/포장개선】 15백만원	90%	납품용으로 포장 개선

선정기준

• 서류전형 → 현장 실사 (단, 현장실사는 신규상품 개발에 한함)

– 계량평가(50) : 매출액 및 수출실적 등

– 비계량평가(50) : 사업목표, 제품적합성, 국제조달 가능성 등

진행절차

모집공고('19.12월) ▶ 업체선정('20.1월) ▶ 사업 약정체결(3월) ▶ 사업추진 및 점검(연중) ▶ 정산 및 평가(12월)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 수출지원 사업신청 → '2020년 한국농식품 및 연관산업류 UN조달시장 진출사업' 지원 신청

담당부서

aT 식품수출부 강지혜 대리(061-931-0744)

07 글로벌 브랜드 육성지원

국내 기업 농식품 브랜드와 수출목표국 현지 인지도 높은 스타와의 매칭을 통한 마케팅 집중지원으로 한국 농식품의 해외시장 인지도 제고 및 수출활력 제고

지원대상 농식품(신선농산물 및 가공농식품) 수출업체

* 신선농산물, 정부인증 보유, 국산원료 사용 품목 수출업체 우대

지원내용

구 분	세부사항
지원내용	• 목표국가 내 브랜드 등록, 스타 섭외, 콘텐츠, 마케팅, 컨설팅 비용
지원한도	• 총 사업비의 80%(자부담 20%) 최대 2억 이내 • 지원비율은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중소 80%, 중견기업 70%) • 지원횟수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1~3년차 2억 이내, 4~5년차 1억 이내) * 약정서에 기재한 총사업비의 50% 이상 집행 시 정산 가능
지원업체	• 15업체 내외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원 제외
* 수산식품, '20년 aT 농식품 수출바우처 사업 선정업체 지원 제외
* 기 구축 수출통합조직(2년차 이후) 미가입 업체는 지원 제외(통합조직 품목 기준)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서류전형 → 계량평가 → 비계량평가 → 사업자 선정

- 서류전형 : 사업평가전 신청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정성 검토
- 평가구성(100점) : 계량 30점, 비계량 70점
- 계량평가(30점) : 수출실적, 자기자본비율, 매출액, 가점 등 합산 평가
- 비계량(발표)평가(70점) : 사업이해도, 사업계획 적정성, 브랜드 유망성 등
- 최종선정 : 계량·비계량 평가점수 합산 고득점 순 선정

* 계량평가 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정 대상 1.5배수 내·외에 한정 비계량평가(발표) 실시

진행절차

사업공고(1월) ▶ 사업자선정(3월) ▶ 약정체결(3월) ▶ 사업추진(3~11월) ▶ 정산 및 평가(12월)

* 사업추진 기간 내(7~8월) 중간점검 및 중간정산 실시

신청방법

• **모집시기 :** 매년 1월 경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

담당부서 aT 기업육성부 배재윤 주임(061-931-0864)
윤소라 주임(061-931-0866)

08 농식품수출바우처사업

- 내수기업 육성을 위한 초보기업용 수출바우처 신규 도입 및 운영
- 사업 수요자가 원하는 지원사업을 선택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 패키지 지원

지원대상

최근 3년간(연속) 농식품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수산물 수출업체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상품개발에서 해외시장개척까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에 필요한 수출 전 과정을 포함한 프로그램(20개 사업메뉴) 지원
- 단, 분야별(수출준비바우처(내수기업용) 및 수출고도화바우처(글로벌 수출기업용)) 지원메뉴 차등화

단계	사업메뉴	주요 지원 내용	비고	구분
① 수출준비	수출컨설팅	• 수출역량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외부기관 컨설팅	내수	위탁
	수출전문인력 양성	• 무역실무, 제품개발, 상품화, 인허가 등 외부교육 수강	내수	자체
	기술도입	• 신제품 개발 또는 기존 제품 개선을 위한 외부 연구용역	공통	위탁
	상품분석	• 제품의 효능, 안전성 등 분석 위한 외부기관 용역	공통	위탁
	해외정보조사	• 해외시장 특성, 바이어 등 정보 습득 위한 위탁조사 등	공통	위탁
	해외전문가 초청	• 해외 선진기술 습득을 위한 전문가 초청	공통	자체
	포장디자인 개발	• 제품의 포장·용기 디자인 개선	공통	위탁
	지적재산권 출원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 출원	공통	위탁
	해외인증 등록	• 주요 농식품 수출관련 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	공통	위탁
② 해외진출	현지시장조사	• 현지시장 유통소비실태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출장	공통	자체
	샘플 운송통관	• 신규 바이어 또는 신제품의 샘플 운송·통관·검사	공통	자체
	개별박람회 참가	•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통한 해외진출 지원	공통	자체
	개별바이어 초청	• 신규 거래선확보 위한 유력 해외 농식품 바이어 초청	공통	자체
	유통업체 판촉	• 해외 대형유통매장과 연계한 판촉홍보	공통	자체
	온라인 판촉	• 해외 온라인몰과 연계한 판촉홍보	공통	자체
③ 경쟁력 강화	FTA특혜관세활용	• 원산지 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발급 대행	공통	위탁
	미디어 홍보	• 해외 매스미디어, 온라인매체 등 활용 홍보	공통	자체
	소비자 체험 홍보	• 해외 오프라인 소비자 대상 체험(시음시식) 홍보	공통	자체
	바이어 상담 홍보	• 해외 오프라인 바이어 대상 홍보 및 상담회	공통	자체
	홍보몰 개발	• 해외 제품 및 브랜드 홍보 위한 홍보몰 디자인 개발	공통	위탁

* 사업메뉴 중 특정 1개 사업의 비중이 바우처 총액의 50%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음

추진절차

모집공고	▶	업체선정	▶	약정체결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1월)		(2월)		(3월)		(3월~11월)		(12월)

지원한도

분야	대상자	구분	지원한도	지원비율
수출준비바우처 (내수기업용)	최근 3년간 평균 수출실적 1만~10만불 미만 및 국내 매출 10억이상	중소기업	100백만원	80%
		중견기업		70%
수출고도화바우처 (글로벌수출기업용)	최근 3년간 평균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270백만원	80%
		중견기업		70%

선정방법

모집공고 → 1차 심사(서류) → 2차 심사(서면) → 3차 현장실사 → 선정(협의회)

신청방법

- **참가신청**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을 통해 지원접수

담당부서

aT 기업육성부 임연정 과장(061-931-0863)
문소영 주임(061-931-0865)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Part 3

안전성 및 품질관리 지원

09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직화 교육 13p
10 안전성조사 14p
11 선도유지제 지원 15p

09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직화 교육

정부지정 농산물단지의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농가 및 단지 인적 자원 역량 제고 및 수출농산물 품질·안전성 강화

지원대상 「'20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관리 지침」에 의한 정부지정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지원품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가목의 농산물(단, 임산물 제외)

신청요건 농집 코디네이터(안전성 전담관리인력) 지정

지원내용 · 농가 인식개선, 농가 정보화, 전문기술교육, 품질관리 등 소요 예산의 90% 지원(지원 한도 : 참여 농가 수 50인 이상 20백만원, 20인 이상 15백만원, 20인 미만 12백만원)

부문	세부지원내역
농가 인식개선	• 소속 농가 교육(안전성, 생산기술·품질, 검역 등) • 국내외 조직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조사, 워크숍 등 • 안전성 전담관리 워크숍 참여 비용(개인) • 관련 자격증(품질관리사 등) 취득 소요 비용 및 전문 서적 구매
농가 정보화	• 단지 내 농집 이용 안내 전담인력인 농집 코디네이터(농가 도우미) 인건비 • 단지 농가 대상 농집 시스템 활용 제고 교육 등
전문기술 교육	• 단지 대표품목의 신기술, 신품종 도입 관련 생산 현장 컨설팅 •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소속 농가 대상 홍보물 배포 및 자료제공 • 신품종 도입 관련 테스트를 위한 한시적 종묘구입(판매 목적 불가)
품질관리 (농가)	• 단지 내 품질관리체계 운영지원(농가 점검·지도 등)
사례전파	• 단지 내 우수 영농사례 등에 대한 홍보물 제작 등

담당부서 · aT 농가지원부 이주용 차장(061-931-0822)
박세정 대리(061-931-0824)
노아름 대리(061-931-0826)

· **aT 지역본부 연락처**

시도	지사	연락처	시도	지사	연락처
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031)8060-6051	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062)940-7015
강원	강원지역본부	033)920-1544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053)218-4898
충북	충북지역본부	043)902-9529	부산	부산울산지역본부	051)947-1086
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042)389-5023	경남	경남지역본부	055)604-0252
전북	전북지역본부	063)904-5874	제주	제주지역본부	064)748-9472

10 안전성조사

수출국의 까다로운 안전성 제도는 농식품 수출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출 농식품의 국내 생산단계부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잔류농약 검사비 등을 지원하여 수출환경 조성

지원내용

·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농식품 전반(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자 및 수출농가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

·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 지원품목 : 농식품 전반(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식품위생검사를 실시한 건에 대해 검사비의 90%지원

·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 지원품목 : 가공식품 전반
- 지원내용 : 對 일본 수출 시 수입식품 의무검사주기 완화 및 수입시 수입식품반출서를 교부받기 위하여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서비스 지원

추진절차·이용방법

· 잔류농약 및 식품위생 검사비 지원

운영계획 수립(본사) ▶ 모집공고(본사, 연중) ▶ 검사비 신청 및 서류 제출(신청업체)(atess.at.or.kr) ▶ 신청서류 검토(지역본부) ▶ 검사비 지원(지역본부)

· 대일 수출가공식품 사전등록 지원

운영계획 수립(본사) ▶ 모집공고(본사, 연중) ▶ 신청서류 제출(수출업체→본사) ▶ 서류 검토 및 일본 후생노동성 등록(aT도쿄지사→한일대사관→일본후생노동성)

담당부서

· (잔류농약, 식품위생)

- aT 농산수출부 신수철 과장(061-931-0833)
  최슬기 주임(061-931-0836)
- aT 각 관할지역본부(50p 국내지사 연락처 참고)

· (대일수출가공식품사전등록)

- aT 식품수출부 원소현 주임(061-931-0748)

11 선도유지제 지원

수출 신선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및 수출확대를 위한 선도유지제 구입지원 사업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산물 생산자 조직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선도유지제 구입비용(부가세 제외)의 90%
- **지원시기 :** 2020.1.1. ~ 2021.1.5. 온라인 신청분까지
  - 매월 선적분에 사용한 선도유지제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온라인 신청
  - 분기별 정산 예정(ex : 1~3월 온라인신청 건에 대하여 4월 정산 마감)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 수출조직(농가)은 수출신고필증 상의 화주 및 제조자에 한함
* 수출농산물 생산자조직 지원신청은 개별 업체 신청분과 중복지원 불가
* 선도조직 연합법인에 대해서는 연합법인 참여업체별 지원한도 인정

- **지원기준**

선도유지제명	지원부류(품목)
전처리제	화훼류
이산화탄소 흡수제	김치류
이산화탄소 처리제	딸기, 버섯
훈증살균제	사과, 배, 파프리카, 토마토, 단감, 키위
선도유지팩/패드	과실류, 채소류
이산화염소 처리제	배

* 제품별 세부지원한도는 홈페이지(at.or.kr)>홍보센터>공고>수출사업의 공고안내문 참고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atess.at.or.kr)을 통한 전산신청 후 aT 관할지역본부에 선도유지제 구입 및 사용 증빙 송부
- **제출서류 :** 선도유지제 지원신청서, 선도유지제 구입 계약서, 세부사용내역서, 수출신고필증,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 aT 수출지원사업 최초 신청업체는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제출 필수

담당부서

- aT 농산수출부 신수철 과장(061-931-0833)
  최슬기 주임(061-931-0836)
- aT 지역본부 담당자

시도	지사	담당자	연락처	시도	지사	담당자	연락처
경기	서울경기 지역본부	문지은	031-8060-6052	전남	광주전남 지역본부	권덕중	062-940-7015
인천	인천지역본부	지혜선	032-272-3001	경북	대구경북 지역본부	이상하	053-218-4906
강원	강원지역본부	배상욱	033-920-1544	부산	부산울산 지역본부	임지현	051-947-1084
충북	충북지역본부	황유진	043-902-9526	경남	경남지역본부	서영진	055-274-4818
충남	대전세종충남 지역본부	이은지	042-389-5023	제주	제주지역본부	김영진	064-746-9472
전북	전북지역본부	김기현	063-904-5874				

Part 4

통관 및 물류지원

12	수출물류비 지원	17p
13	항공공동물류 활성화사업	18p
14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	19p
15	콜드체인 구축사업	20p
16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21p
17	수출보험지원	22p
18	해외인증 등록지원	25p

12 수출물류비 지원

포장·운송 등 물류비의 부담이 큰 농식품 부류에 수출물류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등록일 기준 과거 1년간 단일부류 수출실적(FOB)이 10만$ 이상인 업체
  - 단, <일본 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대만 수출 배추 사전등록제>, <홍콩 수출 딸기 수출업체 사전신고제>에 의거 ID 보유 수출 건(파프리카, 방울토마토, 대과토마토, 청고추, 참외) 및 사전등록 수출업체에 한해 지원
- 지자체 : 중앙정부 지원대상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각 지자체별 기준 설정
  - 지자체별 지원기준 상이

지원품목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및 신선 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 지원부류 :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화훼류, 김치류, 인삼류, 축산물, 전통주, 장류, 차류, 쌀가공품, 곡류 및 기타가공류 등 13개 부류

지원내용

지원 한도	• 표준물류비의 22%를 한도로 수출물량 기준에 따라 중앙정부(7% 이내 / 수출업체)와 지자체(15% 이내/수출업체+농가분)가 분담하여 지원 * (중앙물류비) 수출통합조직, 수출협의회 미가입 시 1% 지원 – 수출통합조직 품목 : 파프리카, 버섯류, 딸기, 포도, 절화류 – 수출협의회 품목 : 김치, 인삼, 배, 사과, 단감, 유자차, 막걸리, 장류, 전통주, 양란, 닭고기, 쌀, 채소종사, 토마토, 배추·양배추
내 용	• '20.1.1.~12.31. 수출 선적분 지원(B/L상의 수출선적일 기준) • 중앙정부 월 2회 /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 • 코로나19 대응 동남아 및 신시장 등 수출물류비 추가지원 등
지원액	• 수출물량 × 품목별·국가별·운송방법별 지원단가(표준물류비의 22% 이내)

추진절차

지원업체 사전등록 ▶ 신청접수 (상시신청) ▶ 지원신청서 검토 ▶ 지원금액 계산 및 지급(월 2회)

신청방법

수출지원시스템(atess.at.or.kr) 접속 → 업체 기본정보 입력 → 수출실적 입력 → 수출증빙자료 제출(관할aT지역본부)

담당부서

- aT 농가지원부 장정호 차장(061-931-0821)
  이선영 대리(061-931-0823)
- aT 지역본부 담당자

시도	지사	담당자	연락처	시도	지사	담당자	연락처
경기	서울경기지역본부	이은정 정해영 문지은	031-8060-6054 031-8060-6013 031-8060-6052	전남	광주전남지역본부	이수빈	062-940-7030
인천	인천지역본부	지해선	032-272-3001	경북	대구경북지역본부	김재은	053-218-4898
강원	강원지역본부	이정민	033-920-1549	부산	부산울산지역본부	임지환	051-947-1084
충북	충북지역본부	황유진	043-902-9529	경남	경남지역본부	안보람	055-274-4813
충남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이은지	042-389-5023	제주	제주지역본부	김영진	064-746-9472
전북	전북지역본부	전유현	063-904-5873				

13 항공공동물류 활성화사업

신선농산물 원거리 항공 활성화를 통한 신규시장 개척 지원 및 수출물류비 절감 도모

지원대상 신선농산물 수출업체(화주)

지원내용

- **지원내용**
  - aT와 항공(운송)사간 약정된 항공공동물류 노선을 이용하여 수출한 신선농산물에 대해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 (항공) 유류할증료의 25~50% 지원
    * 수출통합조직 결성품목(파프리카, 딸기, 버섯, 포도)의 경우 가입업체는 50%, 미가입업체는 25%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3천만원
    * 수산·임산물 및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물량은 인센티브 지원제외

진행절차

추진계획 수립(aT) ▶ 사업안내 및 모집공고 ▶ 인센티브 신청 및 이용실적 증빙제출(매월) ▶ aT 인센티브 정산(매분기) 및 사업결과 보고

추진현황 운영 품목 및 노선 : ('19) 13품목 110노선 → ('20) 17품목 349노선

* 참여항공사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싱가포르항공, 캐세이퍼시픽항공, Air France KLM, 에어아시아, 타이항공

신청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수출통합조직의 경우 물류 취합 후 신청 접수

담당부서 aT 신북방사업부 김유진 차장(061-931-0972)
임제연 주임(061-931-0977)

14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

수출 농식품 해외물류(보관) 지원을 통한 품질·가격경쟁력 제고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현지법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해외공동물류센터 이용료(보관료, 입출고료)의 70~90%

• **지원한도**

– (계속 지원업체) 업체별 5~60백만원 (신규 지원업체) 업체별 5~20백만원

* 임산의 경우 계속/신규 지원업체 구분 없이 업체별 5~20백만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한도
해외공동물류센터	냉동·냉장창고	(신선 및 국산원료) 이용료의 90% (가공) 이용료의 70% (임산) 이용료의 80%	* 계속 지원업체 : 업체별 5~60백만원 * 신규 지원업체 : 업체별 5~20백만원 * 임산 지원업체 : 업체별 5~20백만원
	상온창고 (칭다오물류센터)	이용료의 50%	
	도쿄 복합물류센터	임차료의 60~80%	

선정기준

• '20년 이용업체 모집 및 평가를 통해 업체당 지원한도 설정

이용업체 선정	지원방법
각 관할 해외지사가 모집하여, 이용업체 평가를 통해 지원한도 설정	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 (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

진행절차

업체평가 및 선정 (1~3월/7~8월) ▶ 사업 약정체결 (3월) ▶ 사업추진 및 정산 (분기별) ▶ 최종 정산 및 결과보고 (12월)

이용방법

aT해외지사

관리감독 ↓ ⑤ 비용정산

수출업체 ② 선정 → 위탁 물류업체 (창고) ⑤ 운송 → 유통업체

① 오더 및 계약체결
③ 대금결제 ↖ ↑ ④ 물품보관 지시

바이어

추진현황·계획

•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정현황 : ('19) 15개국 61개소 → ('20) 17개국 65개소 내외

– 신남방(ASEAN), 신북방(러시아) 등 수출유망국가 공동물류센터 신규 지정 예정

신청방법

• 모집시기 : (상반기) 2~3월 (하반기) 7~8월 중 모집예정

* 시기는 추후 변동가능

• 참가신청 : 각 관할 해외지사

담당부서

aT 신북방사업부 김민호 차장(061-931-0971)
배슬기 주임(061-931-0976)

15 콜드체인 구축사업

냉동·냉장 물류 인프라가 미흡한 중국·아세안시장 내륙 콜드체인 구축 지원을 통해 한국산 신선 농식품 시장개척 강화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입업체 및 수출업체 현지법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중국 칭다오물류센터 및 베트남 공동물류센터 → 내륙지역 냉동·냉장 운송비 80% 지원
    * 단, 한국산 신선농산물에 한해 항공운송료 80% 지원

- **지원한도**
  - (중국) 정기선 및 비정기선 업체별 10~80백만원 / (베트남) 업체별 20백만원

구분	출발지역	도착지역	지원내용
정기선	칭다오물류센터	•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 공동물류센터 또는 업체 운송 희망지역	냉동·냉장 운송료의 80%
정기선 (근거리배송)	중국 거점도시 공동물류센터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청두)	• 거점지역 소비처 – 현지 유통매장, 경소상 창고 등	
비정기선	칭다오물류센터	• 중국 내륙지역 – 공동물류센터 또는 업체 운송 희망지역	
	베트남(하노이, 호치민) 공동물류센터	• 하노이·호치민 및 인근 지역 소비처 – 유통매장 또는 업체 운송 희망지역	
비정기선 (항공운송)	칭다오물류센터	• 중국 내륙지역 – 업체 항공운송 희망지역	

선정기준

- '19년 이용업체 모집 및 평가를 통해 업체당 지원한도 설정

이용업체 선정	지원방법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및 하노이지사가 모집하여, 이용업체 평가를 통해 지원한도 설정 * (베트남) 사업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공동물류센터 이용 업체중 사업 참가 희망업체를 별도 평가 없이 지원	운영실적에 의한 실비정산 (물류업체에서 매월 청구)

진행절차

업체평가 및 선정(1~3월/7~8월) ▶ 사업 약정체결(3월, 8월) ▶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연중) ▶ 정산 및 결과보고(12월)

* (베트남) 사업 초기단계임을 감안하여 연중 수시 정산을 통한 집행현황 점검 예정

신청방법

- 모집시기 : (상반기) 2~3월 (하반기) 7~8월 중 모집예정
  * 시기는 추후 변동가능
- 참가신청 : 칭다오aT물류유한공사 및 하노이지사

담당부서 aT 신북방사업부 김민호 차장(061-931-0971)
오송은 주임(061-931-0975)

16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해외 신규시장 및 바이어 개척을 위한 샘플제공 및 시험수출 등에 소요되는 통관·운송비를 지원하여 잠재적 수출시장 확대 도모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 지원품목 : 수출 농식품 전반(임산물, 수산물 및 연초류 제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품목·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0.1.1.~2020.11.30.

* 단, 2019.12월 실적은 소급지원/사업비 소진시 선착순 지원

- **지원 내용 :** 해외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 운송·통관비의 80%
  - EMS, DHL 등 국제특송 샘플송부시 : 총 특송비의 80%지원
  - 국별 샘플송부 여건을 고려하여 '핸드캐리'로 발송한 통관 운송비도 지원
    단, 수출면장을 발급받고, 핸디캐리 운송비 영수증(세금계산서)을 제출하여야 함.
  - 시험수출 형태(정식통관)의 샘플송부 시 내륙운송료, 해상(항공)운임, 국·내외 통관비 80% 지원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500만원

- **지원조건 :** 정상수출품과 구별하여 별도 무상수출한 경우에 한함

* 「수출신고필증」상 (거래구분 92 / 결제방법 GN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회당 샘플 발송물량은 10BOX & 50kg 한도 내에서 지원
* 동일 바이어 대상 샘플발송 최대 4회 인정

추진절차

수출지원시스템 (global.at.or.kr) 지원 신청 ▶ 관련 증빙검토 후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월1회) ▶ 본사는 지사별 결과 취합후 정산지급

모집시기

- **2020.1.1.~11.30.**
  - 수출업체(매월20일까지 신청) → 지역본부 취합 보고 (월말) → 익월 지원

신청방법

수출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증빙서류를 관할 aT 지역본부로 제출

담당부서

- aT 신남방사업부 조광일 차장(061-931-0968)
  박은영 주임(061-931-0991)
- aT 지역본부 담당자

관할	담당자	연락처	관할	담당자	연락처	관할	담당자	연락처
서울 경기	이은정 주임	031-8060-6054	인천	지혜선 주임	032-272-3001	강원	이정민 사원	033-920-1549
충북	김낙권 차장	043-902-9525	대전 세종	이은지 주임	042-389-5023	전북	전유현 차장	063-904-5873
광주 전남	이수빈 주임	062-940-7000	대구 경북	이상하 과장	053-218-4906	부산 울산	임지현 과장	051-947-1091
경남	서영진 차장	055-274-4818	제주	김영진 주임	064-746-9472	-		

17 수출보험지원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수출업체의 안정적 경영 지원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수산물, 임산물 제외)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 항목	환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지원 대상	일반형, 범위선물환, 옵션형(부분보장/완전보장) 가입비	일반 선적후, 농수산물 패키지 및 중소중견 플러스+ 단체보험 가입비
지원 비율	가입보험료의 95%	가입보험료의 90% * 단, 단체보험은 100%
지원 한도	40백만원 한도	40백만원 한도

-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상품특성에 따라 지원내용 변경가능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는 예산부족 등의 경우 지원기간 중 조정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 수출보험 긴급지원 및 무역클레임 특약 추가

* (긴급지원) 대중국 수출대금 미회수시 보험료 할인 등('20.02.21.~'20.08.31.)
* (무역클레임) 단기수출보험에 무역클레임 특약 선택 유도

진행절차

- **운영방식 :** 한국무역보험공사 위탁
- 수출업체는 보험공사에 직접 계약 체결하며, 보험가입 시 자부담분(가입보험료의 5~10%)에 한하여 가입비 납부
  - 단, 단체보험의 경우 aT에서 보험공사에 직접 계약 체결하며, 업체 자부담 없음
  - 단체보험은 매월 global.at.or.kr을 통해서 상시 모집

담당부서

- aT 농가지원부 장정호 차장(061-931-0821)
  최인주 주임(061-931-0827)
-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중앙지사	02-399-7452 02-399-6964	대전세종충남지사	042-526-3291	경남지사	055-286-9394
강남지사	02-551-0481	충북지사	043-236-1301	전북지사	063-276-2363
구로디지털지사	02-6300-6300	강원지사	033-765-1061	광주전남지사	062-226-4823
경기남부지사	031-259-7600	부산지사	051-245-3981	제주지사	064-751-6602
경기북부지사	031-932-3501	대구경북지사	053-252-4932	시화출장소	031-499-5590
인천지사	032-422-2713	울산지사	052-261-1833	천안출장소	041-622-7516

[참고]

환변동보험 종류

구 분		내 용	특 징
일반형	일반선물환 (Forward)	환율 하락 시 보험공사에서 환차손(보험금) 지급하고, 환율 상승 시 업체에서 환차익 (환수금) 납부 – 보험금 : 보장환율 > 결제환율 – 환수금 : 보장환율 < 결제환율	환율 하락 시 보험금을 지급하나, 환율 상승 시 업체에서 부담 – 통화 : USD, JPY, EUR, CNY – 조기결제 가능
	범위선물환 (Range Forward)	일정 범위까지는 환위험에 노출되나 일정환율 이하로 하락시 보험금 지급, 일정환율 이상으로 상승시 환수금 납부 * 보상시작환율 : 보장환율–10/–20/–30 * 환수시작환율 : 보장환율 +α	보험료 일반선물환과 동일한 수준이나 일정범위 환위험 노출 – 통화 : USD, JPY, EUR – 조기결제 불가능
옵션형	부분보장 옵션형 환변동 (Put Spread Option)	환율 하락 시에는 공사에서 보험금 지급(최대 외화당 20~80원 한도 범위 내), 환율 상승 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	환율 상승시 업체부담 없음 – 통화 : USD, JPY, EUR – 조기결제 불가능
	완전보장 옵션형 환변동 (Put Option)	환율 하락 시에는 공사에서 보험금 지급(전액 보상), 환율 상승 시에는 환수금 면제되는 상품	환율 상승 시 업체부담 없음 – 통화 : USD, JPY, EUR – 조기결제 불가능

* 지원비율은 모두 가입보험료의 95%로 동일하며, 지원한도는 일반선물환, 범위제한선물환, 부분보장형옵션을 합산하여 40백만원 한도임
* 보험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보험공사 영업점 문의 요망

한국무역보험공사(http://www.ksure.or.kr/)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영업점	연락처
중앙지사	02-399-6964	대전세종충남지사	042-526-3291	경남지사	055-286-9394
강남지사	02-551-0481	충북지사	043-236-1301	전북지사	063-276-2363
구로디지털지사	02-6300-6300	강원지사	033-765-1061	광주전남지사	062-226-4823
경기남부지사	031-259-7600	부산지사	051-245-3981	제주지사	064-751-6602
경기북부지사	031-932-3501	대구경북지사	053-252-4932	시화출장소	031-499-5590
인천지사	032-422-2713	울산지사	052-261-1833	천안출장소	041-622-7516

[참고] 단기수출보험(농수산물패키지)

상품개요

- **구　성 :** 기본계약과 선택계약
- **계약기간 :** 1년
- **가입대상 :** 농산물 수출자 또는 생산자
- **보상금액 :** 책임금액 범위 내
- **가입방법 :** 기본위험(대금미회수 위험) 가입 필수, 나머지 위험은 선택 사항

상품별 설명

구 분	기본계약	선 택 계 약	
	대금미회수위험	수입국 검역위험	클레임발생 위험
책임금액	1억원 ~ 3억원 (백만원 단위로 선택)	1백만원 ~ 1천만원 (백만원 단위로 선택)	1천만원 ~ 5천만원 (백만원 단위로 선택)
보상요건	수입자 또는 수입국의 사정으로 수출대금이 회수되지 않는 경우	수입국 검역과정에서 소독, 폐기 명령	수입자의 클레임 제기
보상내용	계약기간 중 모든 수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훈증 및 폐기 비용 보상	클레임 처리비용 (조사, 소송 등)
보험요율 무신용장	신용장거래 0.3% 무신용장 2.0%	4%	0.7%
보상거절	물품에 하자 또는 법령 위반 수출시		본지사간 수출거래, 법령위반 및 수출대금 결제 만기일 경과후 발생한 클레임
보상시기	보험금 청구 후 1개월 이내		
보상액	보험계약 범위내에서 보상	소독 및 폐기 비용	품질조사비 및 중재, 소송비100%, 재수입 또는 전매시 운송비 및 현지 창고 보관비 50%

*보험요율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일반 단기수출보험(선적후)와 농수산물 단기수출보험(선적후)의 차이점

구 분		농수산물 단기수출보험(선적후)	일반 단기수출보험(선적후)
품 목		농·수·축·임산물	제한 없음
우대 내용	담보위험	수입국의 행정규제조치 또는 검역기준 변경에 따른 통관불능 위험 포함	–
	보험료율	결제방법 및 기간에 따라 단기수출보험의 35% ~ 55% 수준	–

18 해외인증 등록지원

수출업체의 해외인증 지원을 통한 고품질·고부가 제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비관세 장벽 해소에 기여

지원대상

농식품 제조 및 수출업체(수산물, 연초류, 비식품 제외)

* 한식연, 지자체, 중기청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건은 중복지원불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지원 제외

대상 인증제도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해외인증

할랄(JAKIM, MUI, MUIS KMF 등), GFSI 승인인증 (FSSC22000, ISO22000, BRC, SQF, IFS, Global GAP 등), 미국 FDA, 해외유기인증, 코셰 등

* ISO14001(환경경영), ISO45001(안전보건경영) 등 농식품 수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증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기준	지원범위	지원한도
▪ 해외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최종 정산확정금액)의 70%	▪ 인증취득비 – 심사비, 등록비 등 ▪ 대행비 – 컨설팅비, 통역비, 교육비 등	▪ 업체당 연간 2천만원 이내 * 복수 인증 취득 업체에 한해 40백만원 한도 내 지원

추진절차

지원신청서 제출('20년 4월) ▶

신청서 평가 후 대상업체 선정 ▶ 단계별 진행사항 시스템 내 입력 ▶ 인증 취득 후 정산신청 ▶ 서류 검토 후 비용 정산

신청방법

- 수출업체는 aT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을 통해 사업 신청
- aT본사에서 신청내역 평가 후 지원대상 업체를 일괄 선정하여 aT 관할지역본부에 통보 / aT 관할지역본부는 해당 업체에 선정결과 안내 및 사후관리
- 수출업체는 인증취득 후 aT지역본부에 해당 인증서 사본, 관련증빙서 제출
- aT지역본부는 증빙서 검토 후 정산지원 결과를 본사 보고

담당부서

aT 기업육성부 임연정 과장(061-931-0863)
문소영 주임(061-931-0865)

① 할랄식품(Halal Food) 인증 소개

개요

- '할랄(Halal)'이란 아랍어로 '허용된 것'이라는 뜻으로 '할랄 식품(Halal Food)'은 이슬람 율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생산된 농수산식품을 의미
  - 철저하게 할랄이 아닌 음식과 분리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매우 청결한 음식관리 수준을 자체적으로 요구
  - 비할랄식품 : 돼지고기(가공품 포함), 저장·판매·처리·보존 과정상 돼지고기와 접촉한 식품, 모든 생물의 피 및 배설물, 주류성분이나 중독성분 함유제품 등

보급현황

- 할랄시장의 매출규모는 '14년 13,9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2012년 전세계 인구의 18억 명, 2020년 전세계 인구의 30% 이상 달할 것으로 전망
- 할랄제품은 깨끗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으로 비무슬림인 사이에서도 인기 상승
  - 네덜란드의 할랄 쿠키·초콜릿 제조업체 마르하바 소비자의 25%는 비무슬림인

국가별 할랄인증

- **인도네시아 : BPJPH**
  - '19.10.17부터 신규 법령이 시행되어 할랄 인증기관이 민간기관(MUI)에서 종교부 산하 할랄인증청(BPJPH)으로 변경됨
  - 식품인증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부터 할랄 인증 의무화 예정
  - 품목별 400만원~2,000만원 / 4~6개월 소요(품목, 인증기관 등에 따라 상이)

- **말레이시아 : JAKIM**
  - 할랄 로고 개발 및 인증시스템을 개발하는 정부기관 JAKIM은 12년부터 말레이시아 유일의 할랄인증기관으로 지정됨
  - 할랄 인증인 MS1500:2009는 말레이시아 표준부(Department of Standard)에 의해 개발된 할랄 제품의 생산, 취급, 보관기준에 대한 ISO인증이며, GMP와 GHP와 같은 국제기준을 준수

    * '13년 7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 JAKIM(이슬람 개발부)이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 할랄인증)에 대해 동등성을 인정함

- **싱가포르 : WAREES(MUIS)**
  - 할랄 품질경영시스템(Hal-MQ)을 기반으로 할랄 식품에 대한 심사 진행
  - MUIS에서 인증제도를 관리하며, 산하기관인 Warees Halal기관에서 시험 및 인증서 발급 업무 담당

해외 발급기관

국 가	발급기관
인도네시아	종교부 산하 할랄인증청(BPJPH)
말레이시아	Ministry of Islamic Development
싱가포르	싱가포르 이슬람종교위원회(MUIS)

② 코셔(Kosher) 인증 소개

개요

- '코셔(Kosher)'란 히브루어로 '적합한'이라는 뜻으로 현재는 '유대율법에 합당한 음식'이란 의미로 사용됨
  - 코셔에 해당하는 육류와 가금류는 반드시 규정된 방식대로 도살하여야 하며, 육류와 유제품은 함께 생산 또는 섭취 불가
- 코셔 인증이란 원재료 및 생산설비를 통해 특정 식품의 코셔 기준에 부합 여부를 가리는 제도

보급현황

- **코셔 인증 소비자 :** 유대인, 무슬림, 제7안식교인, 웰빙 추구 소비자
  - 전세계 유대인 수 : 약 1,350만명 (이스라엘 : 576만명 / 미국 : 528만명 추정)
  - 미국 수퍼마켓에서 판매된 식료품의 40%가 코셔 인증마크를 부착
  - 무슬림 또한 코셔 식품을 먹을 수 있어 20억 무슬림 인구가 잠재시장으로 추정
- 전세계적으로 소비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코셔 식품은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프리미엄 식재료로 인식됨

국가별 할랄인증

- **인증기관 :** 수백 개의 코셔 인증기관 중 OU, Star-K, KosherQuest 등이 가장 알려져 있으며 이 중 OU마크가 전체 코셔 제품의 70 ~ 80% 차지

  * ADM, Cargill, Campbell, Coca Cola, Heinz, Nestle 등 세계적 식품 기업 OU마크 선택

- **인증종류 :** 제품 종류에 따라 OU(우유, 육류 비포함), OU-D(유제품), OU-M (육류) 등으로 구분

- **인증 절차 및 마크**

인증 절차	인증 로고
신청서 제출 → 생산 시설 검사 (OU 실현 가능성 검토) → 이사회 평가 승인 → 계약서 작성 → 생산 시설 재검사 → 코셔 인증서 발급	ORTHODOX UNION U

- **소요기간 :** 평균 3개월 소요

소요비용 품목당 연간 $5,000 ~ $7,000

Part 5

현지 유통망 개척

19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29p
20 바이어 거래알선 32p
21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35p
22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지원 36p
23 Global K-Food Fair 37p
24 해외판촉행사 지원 38p
25 온라인모바일마케팅 39p
26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42p

19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① 종합박람회 참가지원

국내 중소 농식품 수출업체의 수출 역량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위해 주요 해외 식품 전문 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 지원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한국관 내 1부스 무상제공 * 체재비 등 직접 지원 없음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비율	지원한도	비 고
• 부스임차비	중소기업	100%	1부스	• 한국관 내 1부스 무상 제공
	대 기 업	50%		
• 장치비	중소기업	100%	1부스	• 한국관 내 1부스 무상 제공
	대 기 업	50%		
(기본비품 임차비)	중소기업	100%	1부스	• 쇼케이스, 시식대, 테이블, 의자, 전기1kw
	대 기 업	50%		
• 운송통관비 / 냉장(냉동) 비품임차비	신선농산물 참가업체	100%	300만원	• 신선농산물에 한함 (24시간 전기료 지원 포함)
• 기타	• 한국 농식품 미개척 시장 박람회에 한해 현지어 통역 및 가공식품 운송통관비 지원 – 통역 : 1~3업체당 1명 배치/ aT에서 선발한 통역을 수출업체 부스에 배정 – 가공식품 운송통관비 : 지원한도(100만원) ※ 대상 박람회 : 폴란드(4월), 브라질(5월), 인도(9월), 카자흐스탄(11월)식품박람회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 전시품 발송 및 비품 신청(2개월 전) ▶ 박람회 참가

추진현황·계획

- 연 2회
- '20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4월), '21년 상반기 참가업체 모집(10월)

신청방법

- aT홈페이지(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내 국제박람회 모집공고 → 국제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수출실적 등), 정부정책 호응도(인증서 등), 참가업체·품목의 현지 시장 진출여건 등

담당부서 aT 신유통채널사업부 성국경 차장(061-931-0981)
김용태 대리(061-931-0983)

[참고] 20년 국제식품박람회 참가계획

구분	주최국/도시	개최일정
<종합박람회 >		28회
1. PROD EXPO	러시아/모스크바	2/10~2/14
2. GULFOOD	UAE/두바이	2/16~2/20
3. Natural Product Expo West	미국/애너하임	개최취소
4. Foodex Japan	일본/도쿄	개최취소
5. MICF Beijing China	중국/베이징	미정
6. FHA Asia	싱가포르/싱가포르	개최취소
7. World Food Poland	폴란드/바르샤바	미정
8. APAS Trade Show	브라질/상파울루	미정
9. Food & Hotel Myanmar	미얀마/양곤	6/3~6/5
10. FOOD TAIPEI	대만/타이베이	6/17~6/20
11. Fancy Food Show Summer	미국/뉴욕	6/28–6/30
12. Vietnam EXPO	베트남/하노이	7/1~7/4
13. MIFB	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	7/22–7/24
14. WOFEX	필리핀/마닐라	8/5~8/8
15. SIAL CANADA	캐나다/몬트리올	8/5~8/7
16. EXPO Food Guangzhou	중국/광저우	8/9~8/11
17. HKTDC Food Expo	홍콩/홍콩	8/13~8/15
18. Fine Food Australia	호주/멜버른	9/7–9/10
19. Annapoorna–Anufood India	인도 /뭄바이	9/23–9/25
20. Asia Fruit Logistica	싱가포르/싱가포르	9/16~9/18
21. thaifex anuga ASIA	태국/방콕	9/22~9/26
22. Sial China	중국/상하이	9/28~9/30
23. World Food Moscow	러시아 /모스크바	9/22–9/25
24. SIAL Paris	프랑스/파리	10/18~10/22
25. FOODEXPO QAZAQSTAN	카자흐스탄/알마티	11/4~11/6
26. China International Import Expo	중국/상하이	11/5~11/10
27. Sial Interfood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1/11–11/14
28. Foodexpo Vietnam	베트남/호치민	11/18–11/21

* 위 참가계획은 3월 말 기준이며 변동 가능

19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② 개별박람회 참가지원

공사가 주관하지 않는 해외박람회에 개별 참가 지원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내역
지원한도	• 최대 500만원/1회 (지원비율 90%)
지원기간	• 20.1.1. ~ 20.11.30. 중 추진된 박람회
지원항목	• 임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등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전시품 운송통관비(운송사를 통한 운송통관비만 지급) * 출장자 항공료, 숙식비, 통역비 등은 미지원

* 대기업의 경우 지원한도의 50% 범위 내 지원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접수 ▶ 업체 선정 및 설명회 개최 (상반기 : 전년 11월 하반기 : 당년 4월) ▶ 박람회참가(연중) ▶ 참가비지원(30일 이내)

모집시기

- **현황 :** 연간 200회 수준
- **계획 :** '20년 하반기 참가업체 모집(4월)

신청방법

- aT홈페이지(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내 개별 참가박람회 모집공고→ 개별참가박람회 참가 신청
- **선정심사기준 :** 참가업체의 수출시장 개척의지(수출실적 등), 정부정책 호응도(인증서 등), 참가업체·품목의 현지시장 진출 여건 등

담당부서 aT 신유통채널사업부 성국경 차장(061-931-0981)
김규원 사원(061-931-0987)

20 바이어 거래알선

① 대규모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Buy Korean Food)

해외 aT지사 및 재외공관 추천 우수바이어를 초청하여 국내 수출업체와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지원함으로써 농식품 수출 확대를 도모

지원대상

- 해외바이어(수입업체, 벤더, 유통업체)
- 국내수출업체

지원내용

- 바이어 초청 및 상담장 구성 등
  - 해외바이어 : 왕복 항공료(Economy), 체재비, 통역, 기타 교통편의 등
  - 국내수출업체 : 바이어와 상담기회 제공
  - 사전 매칭된 바이어와 1:1 수출상담 진행

  * 상담회장 내 상담부스 제공, 사전 매칭된 수출업체와 1:1 상담

지원절차

모집공고 ▶ 국내업체 바이어 매칭 신청 ▶ 상담주선 ▶ 상담회 개최

* '상담주선'은 바이어가 상담 원하는 수출업체를 결정하여 매칭

모집시기

- **모집시기 :** '20. 9월 예정(연 1회 추진하며, 필요시 상·하반기 2회 추진 가능)

  * '20년 상담회 개최 10월 셋째 주 예정

신청방법

- **참가신청 :** 모집공고 확인(www.at.or.kr)
  → 온라인 신청(bms.at.or.kr)
  → 상담 스케줄 확인(bms.at.or.kr)

담당부서

aT 신유통채널사업부 김광석 차장(061-931-0982)
최주희 대리(061-931-0974)

20 바이어 거래알선

② 개별업체 바이어 초청 지원

수출업체의 해외 유망 바이어 초청을 통해 실질적인 상담 및 수출계약을 지원하여 수출실적 증대 도모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수출업체 당 1명의 바이어 초청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 항공료 : 이코노미 등급 왕복 기준
  - 숙박비 : 60만원 이내 실비(3박 기준, 1박 20만원 한도)

추진절차 모집공고 및 신청 ▶ 업체 선정 및 사업 실행 ▶ 각 지사 결과보고 제출 ▶ 바이어 초청비용 지원

모집시기
- **모집시기 :** 연 1회(사업비 여건에 따라 하반기 추가 실시)

신청방법
- **참가신청 :** 모집공고 확인(www.at.or.kr) → 신청 접수(global.at.or.kr)

  * 본사 선정평가 후 선정대상 각 지사 통보

  * 선정심사기준 : 초청바이어 국가의 시장성, 상담품목의 수입확대 가능성, 현지시장 진출 용이성, 공사 수출지원 사업 연계성 등

담당부서 aT 신유통채널사업부 김광석 차장(061-931-0982)
허지영 주임(061-931-0988)

20 바이어 거래알선

③ 온라인·모바일 수출상담회 지원

수출업체와 해외 유망바이어 간 온라인·모바일 기반의 수출 상담을 지원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박람회 사업참가업체 등)

지원내용
- 1업체 1개 외국어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 해외바이어 대상 온라인홍보 (AgroTrade 온라인 박람회 개최)
- 해외바이어 매칭 서비스 제공
- 샘플 발송비 지원
- 해외바이어–수출업체 온라인·모바일 화상상담 지원

추진절차

취소·연기 박람회 참여업체 대상 모집공고 및 신청 ▶ 사업실행① 상세페이지 제작 온라인박람회 구축 웹전단 제작 ▶ 사업실행② 해외바이어 매칭 샘플발송비 지원 ▶ 온라인 모바일 수출상담회 개최 (통역원 지원)

모집시기
- **모집시기 :** 수시 (취소·연기되는 박람회 발생 시 수시 모집)

신청방법
- **참가신청 :** 지원대상 업체별로 aT 담당자가 직접 연락 및 신청서 양식 전달 → 신청서 양식 이메일 회신 (kang@at.or.kr)

담당부서 aT 신유통채널사업부 김광석 차장(061–931–0982)
강태권 주임(061–931–0986)

21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한국 농식품의 신규시장 개척 및 진입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숍인숍 등 현지여건에 맞는 해외 안테나숍 운영사업비 지원

지원대상 한국농식품 취급 해외 벤더 및 수입상 또는 국내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사항** : 임차·장치비, 홍보비, 시음·시식 등 마케팅 비용의 70~90%
  - 신규 품목 입점성과 등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 K-FRESH ZONE 90% 지원, 안테나숍은 평가를 통해 70~80% 차등 지원
  - 운영기간 등 사업의무 미이행시 지원비율이 차감되며 자부담분 증가

- **지원한도액**

구분	지역	운영기간	1년차	2년차	3년차
지원한도 (백만원)	유럽 중국	3개월 이상	150	–	–
		6개월 이상	200	130	85
		9개월 이상	260	200	110
	동남아 중앙아	3개월 이상	140	–	–
		6개월 이상	190	120	80
		9개월 이상	240	190	100
	서남아 중동	3개월 이상	130	–	–
		6개월 이상	180	100	70
		9개월 이상	220	170	90
	중남미 아프리카	3개월 이상	120	–	–
		6개월 이상	170	90	70
		9개월 이상	200	160	90

- K-Fresh Zone 지원한도액은 별도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

구분	적용기준	3~5매장	6매장 이상	9매장 이상
	정산비율	80%	90%	
지원한도 (백만원)	3개월 이상	150	170	200
	6개월 이상	200	230	270
	9개월 이상	260	290	340*

* 매장 장치비(인테리어)는 1회만 지원/ 연차별 지원한도는 각각 연차별 70%, 60%로 차감 지원

지원절차

세부실행계획 수립		운영주체 선정		업무위탁 및 준비		안테나숍 운영
• 세부실행계획 수립(aT) • 농식품부 승인	▶	• 운영주체 모집공고 • 운영주체 선정	▶	• 약정체결(본사, 해외) • 물품전시 준비 등	▶	• 운영·정산 • 사후관리(성과)

모집시기 매년 초 모집, 신청현황에 따라 추가 모집

추진현황·계획 관할 해외지사로 해외조직망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구분	연락처	관할지역
베이징	• E-Mail : beijingat@at.or.kr • TEL : 86-10-6410-6120~6121	중국(화북, 동북지역 및 산동성, 하남성 포함), 몽골
홍 콩	• E-Mail : hkatcenter@at.or.kr • TEL : 852-2588-1614~16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 광동성
LA지사	• E-Mail : losangeles@at.or.kr • TEL : 1-562-809-8810	미국 서부·산악 및 중남미
자카르타	• E-Mail : jakarta@at.or.kr • TEL : 62-21-2995-9032,9033,9035	싱가포르, 말련, 인니, 호주, 뉴질랜드
방 콕	• E-Mail : bangkok@at.or.kr • TEL : 66-2-611-2627~9(내선 12)	태국, 미얀마, 인도
두바이	• E-Mail : dubai@at.or.kr • TEL : 971-4-339-2213	중동,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하노이	• E-Mail : hanoi@at.or.kr • TEL : 84-4-6282-2987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파 리	• E-Mail : paris@at.or.kr • TEL : 33-1-4108-6076~8,6096	유럽연합(EU) 지역, 이스라엘

담당부서 aT 신남방사업부 조광일 차장 (061-931-0968)

22 시장다변화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지원

우리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통한 수출확대 및 안정적 수출 여건 확보

지원대상

수출시장 다변화사업 대상 전략국가 6개 권역 20개국에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권역	최우선 전략국가(7)	차순위 전략국가(13)
신남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 인도, 라오스
신북방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유럽	–	이탈리아, 독일, 폴란드
중동	–	사우디아라비아
중남미	브라질	멕시코,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기타	–	남아프리카공화국

지원내용

- **선정규모 :** 70개사(신남방 20, 신북방 15, 기타 35)
- **프런티어(선도기업) 육성 패키지 지원**

구 분	지 원 사 항
시장개척 지원비	• 지원내용 : 제품개발, 판촉, 상품화, 브랜딩, 시장조사, 마케팅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사업 내에서 업체가 필요한 사업 선택 • 지원한도 : (신북방) 40백만원 / (기타지역) 20백만원 * 집행액의 50~90% / 성과별 지원비중 차등 / 수산물만 취급하는 업체 제외
농식품 세일즈 로드쇼	• 지원내용 : 시장개척비(항공, 숙박, 바이어 초청 상담회, 시장조사 등) 지원 * 상·하반기 총 2회, 1회 의무참석 / 업체 목표국 해당 권역별 참여 (4권역) – 파견권역: (아세안) 말레이시아·캄보디아 / 미얀마·카자흐스탄 • (북방권) 러시아(모스크바)·몽골 / (남미) 브라질·멕시코 * 참가비 60만원,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사업비와 별도임
수출상품 마켓테스트	• 지원내용 : (국내) 재한 외국인 파견 개발상품 품평 지원 (해외) 현지운영 안테나숍(파일럿숍) 입점 마켓테스팅 지원
청년해외 개척단 매칭 지원	• 지원내용 : 청년 해외개척단 매칭 1명 현지 시장개척 지원 (aT에서 선발 지원 후 수출업체에서 OJT교육 실시) – 언어 능력 등이 우수한 청년 개척단의 현지 지원으로 수출효과 증대

* 프런티어 업체 선정 시 유관사업(바이어 초청상담회, 국내·외 상품 품평회 등) 우선권 부여

진행절차

당해년도 사업자 모집(1월) ▶ 당해연도 사업자 선정(2월) ▶ 사업이행 약정서 제출 ▶ 중간점검 (추가 사업자 선정 등 실시/6월) ▶ 최종결과보고 (결과평가, 정산/10월)

모집시기

매년 1월 경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수출지원 사업신청] → 프런티어 인큐베이팅 사업 참여사 모집공고 내 [사업신청] (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 온라인 접수 원칙 : 우편 접수, 퀵, 택배, 방문 접수 불가

담당부서

aT 신남방사업부 김선경 대리(061–931–0969)

23 Global K-Food Fair

해외 주요 수출 거점도시 내 B2B 수출상담회와 B2C 소비자행사를 접목한 통합 마케팅 추진으로 한국 농식품 수출네트워크 조성 및 현지 소비저변 확대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제조·수출업체
* 가공수산품 가능, 순수수산물 제외

지원내용

· B2B 수출상담회 참여지원
- 행사장 임차 및 부스 장치비(업체별 상담공간 제공)
- 출장 항공비(참가 페어별 기준가격 내 최대 1백만원 한도 / 업체별 1인)
  * 대기업은 항공비 미지원(모스크바 페어 제외)
- 기타 상담지원(통역원, 바이어 모집·매칭, 디렉토리 제작, 홍보 등)

< 2020년 개최지역 및 시기 >

자카르타	하노이	파리	상하이	두바이	모스크바	뉴욕	방콕
B2B/ B2C	B2B/ B2C	B2B/ B2C	B2B/ B2C	B2B	B2B/ B2C	B2B/ B2C	B2B/ B2C
10.15–10.18	9월 (미정)	9.10–13	10.21–25	11.3–4	9월 (미정)	6.13–16	9.24–27

* 위 개최지역 및 시기는 3월 말 기준이며 변동 가능

지원절차

참가업체 모집(1–2월) ▶ 참가업체 선정(2월) ▶ 수출상담회 참여(5–11월) ▶ 사후성과 입력(5–11월)

* 사후성과 미입력시, 차년도 참가에 제한

선정기준

· 선정규모 : 252개사(페어별 20~50개사 참여)

· 평가항목
- 수출시장 개척의지(수출홍보 현황, 인증서 취득실적 등)
- 품목적정성 및 시장개척 가능성
  * 가점 : 사회적경제기업, 상생협력 우수기업, 수출업체 역량진단 가점업체 등
  ** 수출통합조직(파프리카, 버섯류, 딸기) 미가입 생산자·수출업체

모집시기

매년 1월 말 ~ 2월 초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접속 → 수출지원사업 신청 → K–Food Fair 신청
  * 업체별 총 4개 페어까지 신청 가능

담당부서

aT 신남방사업부 손지희 과장(061–931–0965)
신담호 주임(061–931–0966)
오유진 주임(061–931–0967)

24 해외판촉행사 지원

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행사(시식, 홍보, 프로모션 등) 통해 한국 농수산식품 입점 확대 및 소비자 인지도 제고

지원대상

국내 수출업체 및 수출관련 협회, 해외유통업체 및 바이어

* 단, 국내 수출업체는 현지 입점판매 등 거래관계가 있고 행사추진이 가능한 업체

지원내용

- 해외 소비지에서의 판촉마케팅 활동관련 제반비용
  - 임차비, 입점수수료, 판촉관련 시식대, 행사장 구성 및 이벤트와 관련된 장치 임차 및 설치비용
  - 행사관련 이벤트 용역, 미디어매체 제작 및 광고, 현수막, 전단지, 인터넷 배너 제작, SNS 등 판촉관련 행사 및 제품 홍보관련 집행 비용
  - 판촉행사 관련 홍보요원 고용비, 시식품비 및 시식관련 소모품비 등

  ※ 새로운 유통채널 특성상 상기 이외 비용지원이 필요할 경우 aT와 사전 협의
- 코로나19 대응 긴급 기획판촉 추가 지원(중국재고품목, 중국 전략품목, 시장다변화)
  - 지원기준 : 경기 침체 등 감안 이행 기준 한시적 완화(의무액, 실적 인정기간)
- 판촉사업 지원신청시 제출한 수출목표액을 사업의무액으로 부여
  - 사업의무액을 미달성할 경우, 달성비율(%)에 따라 최종 정산지급액 감액

지원기준

- 지원한도이내 행사관련 실제집행비용의 80% 지원
  - 행사규모(매장 수, 행사지역 등)를 고려하여 사업예산 조정 가능
  - 수출선도조직, 단체 및 협회는 자부담 10%, 200백만원 한도 적용 가능
  - 대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신시장(신북방 등)에 한하여 지원(자부담 50%)

  ※ 인삼, 김치, 유자차, 삼계탕 및 신선부류 등 수출전략 품목은 지원한도이내 행사관련 실제집행비용의 90% 지원

선정기준

- **계량평가(50점)** : 수출목표액, 수출추이, 관련서류(카탈로그, 인증서 보유 여부) 등
- **비계량평가(50점)** : 행사계획 및 품목·국가별 수출확대 가능성, 수입업체(바이어) 규모 등 종합평가

* 전년도 aT 판촉사업 선정 후 중도포기업체는 감점, 사회적기업, 상생협력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기업 가점 부여

진행절차

익년도 상반기 사업자 모집(11월초) ▶ 익년도 상반기 사업자 선정(11월말) ▶ 사업이행확약서 제출(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점검, 결과보고, 정산) ▶

당해년도 하반기 사업자모집(5월) ▶ 당해년도 하반기 사업자 선정(6월) ▶ 사업이행확약서 제출(행사시작 전) 및 사업 추진(점검, 결과보고, 정산)

모집시기

- **모집시기** : 매년 5월, 11월
  - '20년도 하반기 국내공모 판촉 사업자 공고 및 선정 예정(5~6월 중)

신청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접속 → 지원사업신청

담당부서

aT 식품수출부 김혜진 차장(061-931-0741)
이승욱 과장(061-931-0743)
석보금 대리(061-931-0745)

25 온라인모바일마케팅

① 글로벌 B2B 입점지원

글로벌 온라인 B2B 사이트 알리바바에 한국 농식품기업 입점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해 노출빈도를 높여 거래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글로벌 온라인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 (Alibaba.com) 프리미엄 유료회원제 GGS(Global Gold Supplier) 가입 연회비 및 상품 포스팅 비용의 80% 사후 지원

* (회비) USD2,999/1년, (웹디자인 및 포스팅) USD500/1업체

선정기준

- 계량·비계량 및 해외지사 평가
  - 수출역량, 경영안정성, 제품역량, 수출가능성, 해외지사 평가 등

진행절차

모집공고 (3월) ▶ 업체선정 (3월) ▶ GGS 가입 및 약정체결 (4월) ▶ 사업추진 및 중간점검 ▶ 정산 및 평가(12월)

모집시기 매년 3월 경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 [수출지원사업신청] → "글로벌 온라인 B2B 입점 지원" 신청 → (첨부파일 사업계획서 다운로드 및 별도작성 후 업로드)

담당부서 aT 신유통채널사업부 김광석 차장(061-931-0982)
최주희 대리(061-931-0974)

※ 지원내용, 모집시기 등은 추후 변동가능

25 온라인모바일마케팅

② 글로벌 B2C Kmall24 입점지원

한국무역협회 협업 중소기업 전용 B2C 전용 해외 역직구몰 플랫폼인 Kmall24 입점지원을 통한 해외 온라인 수출 지원

지원대상 국산 원료 사용 중소 수출업체 유망품목 입점 희망업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Kmall24 입점 및 기획관 구성, 온라인 홍보 마케팅, 참여업체 인프라 구축 지원 등

구분	지원내용
Kmall24 입점, 기획관 구성, 홍보 마케팅	▪ 입점비, 기획관 구성, 디자인비, 마케팅, 온라인 홍보, 기획관 공동 홍보 등 – 마케팅 비용 * 포인트+쿠폰(합산) : 배정예산의 10% 이내 * 배송료 : 배정예산의 10% 이내 * 증정품+샘플(합산) : 배정예산의 5% 이내 – 온라인 홍보 : SNS 홍보, 기획관 공동 홍보 등 * 입점비, 기획관 구성 관련 비용은 무역협회에서 지원
인프라 지원	▪ 업체별 기초 인프라 구축 80% 지원 – 촬영, 디자인, 번역 등 입점 기초 인프라

* 업체별 인프라 구축 비용의 80%(자부담 20%)

선정기준 희망 수출업체(수출상품) 모집 및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며 Kmall24 전문 MD가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제품 선정

진행절차 모집공고(3월) ▶ 업체선정(3월) ▶ 사업 약정체결(4월) ▶ 사업추진 및 점검(연중) ▶ 정산 및 평가(12월)

모집시기 매년 3월 경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 [수출지원사업신청] → 2020년 글로벌 B2C 입점 지원 사업 모집공고 내 [사업신청] (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담당부서 aT 신유통채널사업부 김광석 차장(061-931-0982)
최주희 대리(061-931-0974)

※ 지원내용, 모집시기 등은 추후 변동가능

25 온라인모바일마케팅

③ 해외 온라인몰 입점 상담회

온라인·모바일 시장 확대 추세에 따른 해외 온라인채널 MD 초청우수 중소식품 수출기업의 온라인몰 수출 상담기회 제공 및 입점 지원

지원대상 한국 농식품 수출업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온라인몰 MD 및 바이어 초청, 수출업체간 1:1 매칭 상담, 유망품목 전시·안내, 온라인 입점 교육, 초청 바이어 대상 팸투어 추진 등

  * 참가업체 제품 전시대 운영 예정(홍보자료, 상담제품 사전 송부 필요)

선정기준 평가기준에 따라 계량, 비계량 평가결과를 집계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진행절차

모집공고 ▶ 업체 평가 및 선정 ▶ 온라인몰 MD 매칭 ▶ 상담회 참가(11월)

모집시기 '20년 상반기(예정) * 시기는 추후 변동가능

신청방법

-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 로그인(신규업체 : 회원가입 필요) → 상단메뉴 [수출지원사업신청] → 2020년 해외 온라인몰 입점상담회 모집공고 내 [사업신청] (기본정보 입력, 신청서 작성 및 업로드)

담당부서 aT 신유통채널사업부 김광석 차장(061-931-0982)
최주희 대리(061-931-0974)

26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 중국 및 주력시장(미국, 아세안) 검역타결 품목 발굴·육성 및 시장 다변화 지원
- 민간주도의 새로운 농식품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한 대중국 수출 확대

지원대상

대중국 전략품목 수출업체 및 현지법인, 품목별 유관협회 및 수출협의체, 현지 바이어 등

* 대중국 11대 전략품목 : 인삼, 버섯, 유자차, 유제품, 쌀·쌀가공품, 삼계탕, 포도, 김치, 장류, 국산원료 가공식품(전통주, 면류), 파프리카

지원분야·지원내용

- **대중국 新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
  - 중국 시장에 맞는 상품개발·개선 및 신규 유통망 구축, 마케팅 비용의 80~90% 지원
  - (상품·메뉴 개발) 제품 개발(위탁 용역), 시장조사, 포장디자인, 성분검사, 인증취득 등
  - (온오프라인 마케팅)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판촉 인건비, 시식행사비 등
  - 지원비율 : 품목별 상이(80~90%)
    * 포도, 김치, 유자, 인삼, 삼계탕, 파프리카 : 90%
  - 지원한도 : 개별사업 최대 2억원 한도
  - 선정절차 : 서류평가 → PT평가 → 최종선정 및 예산배정
    * 품목별 지원비율은 변동 가능

진행절차

모집공고 (1월 말) ▶ 서류, 발표평가 (3월 중) ▶ 사업 약정체결 (3월 말) ▶ 사업추진 및 점검(연중) ▶ 정산 및 평가(12월)

모집시기

매년 2월 경

신청방법

- (국내)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http://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입력
- (중국) 중국 관할지사에 이메일 등으로 신청

담당부서

aT 신북방사업부 김유진 차장(061-931-0972)
김지원 대리(061-931-0974)

Part 6

수출 지원 자금융자

27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운영) 45p
28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시설) 46p

27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운영)

농식품 수출을 위한 원료 및 부자재 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 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업체(일반업체, 농업경영체, 농협)
    (단, 수출계획은 수출신용장·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도	수출업체의 원료 및 부자재구입, 저장, 가공 등 운영자금
지원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5%, 일반업체 3.0% – 지원업체 평가결과 0.5~3.0%p 금리우대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지원비율	총사업액의 90% 이내(중견기업은 80% 이내)
대출기간	1년
사업의무	• 수출의무 : 대출금액의 50% 이상 수출 • 구매의무 : 대출금액의 30% 이상 국산원료 구매 * 신선 수출액이 대출금액의 100% 이상인 업체는 구매의무 이행으로 간주하며, 품목 특성상 국산 원료구매 이행이 어려운 업체는 추가 수출의무로 25~75% 대체 가능
지원한도	업체당 200억원 이내
자금배정	• 업체별 배정한도 – 중소·중견기업 : 전년도 수출금액의 3배 • 업체별 배정금액은 전년도 수출실적에 따른 평점을 산출하여 산정 – 신규업체는 계약액 전액으로 평가 • 전년도 수출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전년도 배정업체중 수출기간 1년 미만인 업체 포함)의 배정금액은 신청일 기준 당해연도의 수출실적의 3배 또는 계약금액 적용 – 계약금액 : L/C금액의 80%, 수출계약서 금액의 50%, 수출용 물품공급계약서 금액의 80%

예산규모

'20년 : 368,082백만원(코로나19 지원예산 200억원 추가 포함)

모집시기

- **자금지원 절차도**

지원안내 신문공고(1월)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월) ▶ 대출 (지원희망시기, 담보제공) ▶ 정산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통계 정보제공동의서 또는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 (외국환은행장 발행) 등

※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담당부서

aT 정책금융부 한승희 차장(061-931-1142)

28 농식품 글로벌육성지원 자금(시설)

농식품 수출을 위한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성화 도모

지원대상 농식품 수출을 위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계획하고 있거나 신규로 수출 관련 시설에 투자하려는 농식품 수출사업자

* 농식품 수출실적이 최근 2개년간 250천$이상(누적금액)이거나, 수출계획이 150천$ 이상인 업체(단, 수출계획은 L/C·수출계약서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재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용도	농식품 수출업체의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지원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고정금리) 농업경영체 2.0%, 일반업체 3.0% • (변동금리) 농협은행의 매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 단,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지원비율	총사업액의 80% 이내
대출기간	10년(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사업의무	시설완료 후 매년 1회 이상 지원업체 점검 또는 2년 이내 해외인증 취득(수출국이 요구하는 해외인증)
지원한도	업체당 30억 원 이내
선정기준	• 최근 2개년 결산서 기준 적격심사결과 5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 업체로 선정 – 재무구조(30점),영업실적(30점), 사업타당성(40점)

예산규모 '20년 : 4,800백만원

추진절차 **• 자금지원 절차도**

지원안내 신문공고(1월) ▶ 지원대상 선정 및 자금배정(2월) ▶ 기성고 확인 ▶ 대출(담보제공) ▶ 사후관리(해외인증서 제출)

• 제출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또는 최근 2개년 수출실적 증명서(외국환은행장 발행), 최근 재무제표 등

※ 지원신청서 양식은 공사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http://www.at.or.kr >> 고객지원사업 >> 자금지원)

담당부서 aT 정책금융부 한승희 차장(061-931-1142)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가이드북

Part 7

참고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찾아보기 49p
aT 지역본부, 해외지사 연락처 50p
연도별 농림수산식품 수출현황 53p

농식품 수출지원사업 찾아보기

찾아보기는 본 가이드북의 28건의 농식품 해외진출 지원제도를 제도 명칭의 ㄱ-ㄴ-ㄷ 순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원제도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페이지
국제박람회 참가지원	신유통채널사업부	061-931-0983	29p
글로벌브랜드 육성지원	기업육성부	061-931-0866	09p
농수산식품수출정보(KATI)	수출정보분석부	061-931-0879	01p
농식품글로벌육성지원자금	정책금융부	061-931-1142	45p
농식품 수출바우처	기업육성부	061-931-0865	10p
대중국수출전략품목육성	신북방사업부	061-931-0974	42p
바이어 거래알선	신유통채널사업부	061-931-0974	32p
샘플통관 운송비지원	신남방사업부	061-931-0991	21p
선도유지제 지원	농산수출부	061-931-0836	15p
선도조직 기반육성	농산수출부	061-931-0835	06p
수출물류비 지원	농가지원부	061-931-0823	17p
수출보험지원	농가지원부	061-931-0827	22p
수출상품화 지원	식품수출부	061-931-0748	07p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조직화 교육	농가지원부	061-931-0826	13p
수출통합조직 육성	농산수출부	061-931-0825	05p
수출컨설팅	기업육성부	061-931-0866	02p
시장다변화 프런티어 (선도기업) 육성	신남방사업부	061-931-0969	36p
안전성조사	농산수출부	061-931-0836	14p
온라인모바일마케팅	신유통채널사업부	061-931-0974	39p
콜드체인구축	신북방사업부	061-931-0975	20p
항공공동물류활성화	신북방사업부	061-931-0977	18p
해외 안테나숍(Antenna Shop) 설치지원	신남방사업부	061-931-0968	35p
해외공동물류센터	신북방사업부	061-931-0976	19p
해외인증등록지원	기업육성부	061-931-0865	25p
해외판촉행사 지원	식품수출부	061-931-0745	38p
현지화 지원	수출정보분석부	061-931-0872	03p
Global K-Food Fair	신남방사업부	061-931-0967	37p

aT 지역본부, 해외지사 연락처

aT 국내 지역본부

지역본부명	주 소	연 락 처
서울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로 229 3층	TEL 031-8060-6000 FAX 031-8010-1095
인천지역본부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66, 608호 (정석빌딩 신관)	TEL 032-888-6162~3 FAX 032-712-2722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6층	TEL 033-647-0061 FAX 033-811-1081
충북지역본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42	TEL 043-902-9523 FAX 043-711-1581
대전세종 충남지역본부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 290번길 11	TEL 042-488-8542~3 FAX 042-720-9282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서광빌딩 6층 601호)	TEL 063-904-5873 FAX 063-711-1273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한국감정원빌딩 1층)	TEL 062-940-7030 FAX 062-944-2624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401, 18층	TEL 053-218-4900 FAX 053-722-2370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자성로 152 (문현동, 한일오피스텔 20층)	TEL 051-644-1401~4 FAX 051-719-9630
경남지역본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408호	TEL 055-274-8300 FAX 055-719-9881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33 (노형동 현대해상빌딩 10층)	TEL 064-746-9471 FAX 064-800-8960

aT 해외지사

구분		주 소	연락처
중국지역본부	베이징 지사	603 Room, Block A, Fairmont Tower No.33 Guangshun North Street, Chaoyang District, Beijing, 100102, China (100102 中國 北京市 朝阳區 广顺北大街 33号院 1号楼 1单元 6层 603室)	E-Mail beijingat@at.or.kr TEL 86-10-6410-6120~1 FAX 86-10-6410-6122
	상하이 지사	Room 3201, New Hongqiao Central Plaza No.83, LouShanGuan Rd., Changning District, Shanghai, 200336, China (200336 中國 上海市 長寧區 婁山關路 83號 新虹橋中心大厦 3201室)	E-Mail shanghaiat@at.or.kr TEL 86-21-3256-6325~7 FAX 86-21-3256-6328
	청뚜 지사	2003 Room, Chengdu Ping An fortune Center No.1, Section 3, Renmin South Road, Wuhou District, Chengdu, Sichuan Province, 610041 P.R.C. China (中国四川省成都市武侯区人民南路三段一号成都平安财富中心 610041)	E-Mail chengdu@at.or.kr TEL 86-28-8283-3376~87 FAX 86-28-8283-3396
	홍콩 지사	Room 705, 7F Jubilee Centre, 18 Fenwick Street, 46 Gloucester Rd, Wanchai, Hong Kong	E-Mail hkatcenter@at.or.kr TEL 852-2588-1614~16 FAX 852-2588-1919
칭다오 aT물류 유한공사		Qingdao aT logistics Co., Ltd West Shuangyuan Rd., Liuting Street, Chengyang, Qingdao, China (青岛市 城阳区 流亭街道 双元路 西 青岛爱特物流有限公司)	E-Mail qingdao_logistics@at.or.kr TEL 86-532-6696-2229 FAX 86-532-6696-2181
일본지역본부	도쿄 지사	Korea Agro-Trade Center, Tokyo Korea Center 5F, 4-4-10 Yotsuya, Shinjuku-ku, Tokyo, 160-0004, Japan (東京都新宿区四谷4-4-10 KOREA CENTER 5F)	E-Mail tokyo@at.or.kr TEL 81-3-5367-6656, 6693~94 FAX 81-3-5367-6657
	오사카 지사	8F, Nomura Fudousan Osaka Bldg. 1-8-15, Azuchimachi, Chuou-Ku, Osaka, 541-0052, Japan (大阪市 中央區 安土町 1-8-15, 野村不動産大阪B/D 8F)	E-Mail osaka@at.or.kr TEL 81-6-6260-7661 FAX 81-6-6260-7663

구분		주 소	연락처
아세안지역본부	하노이 지사	#1213, 12th floor., Keangnam Hanoi Landmark 72 Tower, Plot E6, Pham Hung Str., South Tu Liem Dist., Ha Noi., Viet Nam	**E-Mail** hanoi@at.or.kr **TEL** 84-4-6282-2987 **FAX** 84-4-6282-2989
	호치민 지사	CJ Building, Floor 3, 2 Bis 4-6 Le Thanh Ton Street Ben Nghe Ward, District 1, Ho Chi Minh City	**E-Mail** atcenterhcmc@at.or.kr **TEL** 84-28-3822-7503~4 **FAX** 02-838-227-503
	자카르타 지사	The Energy Building 20th FL, Zone F, SCBD Lot.11A JL.Jenderal Sudirman Kav 52-53, Jakarta 12190 Indonesia	**E-Mail** jakarta@at.or.kr **TEL** 62-21-2995-9032~3 **FAX** 62-21-2995-9034
	방콕 지사	#2102 Level 21, Interchange 21, 339 Sukhumvit Road, North Klongtoey, Wattana, Bangkok 10110 Thailand	**E-Mail** bangkok@at.or.kr **TEL** 66-2-611-2627~9(내선 12) **FAX** 66-2611-2626
미주지역본부	로스앤젤레스 지사	12750 Center Court Drive South, #255, Cerritos, CA 90703, USA	**E-Mail** losangeles@at.or.kr **TEL** 1-562-809-8810 **FAX** 1-562-809-1191
	뉴욕 지사	15 East 40th Street Suite 701 New york NY 10016, USA	**E-Mail** newyork@at.or.kr **TEL** 1-212-889-2561 **FAX** 1-212-889-2560
파리 지사		Korea Agro-Trade Center, 89 Rue du Gouverneur Général Eboué (1er etage), 92130, Issy-les-moulineaux, France	**E-Mail** paris@at.or.kr **TEL** 33-1-4108-6076~8 **FAX** 33-1-4108-2016
두바이 지사		PO BOX 57528 Office #48, Sunset Mall, Jumeirah Beach Rd, Jumeira 3, Dubai, UAE	**E-Mail** dubai@at.or.kr **TEL** 971-4-339-2213 **FAX** 971-4-456-1155
블라디보스토크 지사		Lotte Hotel Vladivostok 520-522 office, 29, Semenovskaya St., Vladivostok, Russia, 690091	**E-Mail** atvladi@at.or.kr **TEL** 7-924-007-1528

연도별 농림수산식품 수출현황

(단위 : 천톤, 백만$, %)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A)		2019년(B)		증감률 (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농림수산식품	4,307	8,250	4,285	8,028	4,487	8,593	4,466	9,153	4,815	9,300	4,740	9,529	△1.6	2.5
▪ 농식품	3,605	6,183	3,635	6,104	3,875	6,465	3,927	6,826	4,183	6,926	4,053	7,026	△3.1	1.4
– 신선	453	1,154	426	1,036	445	1,109	454	1,095	522	1,276	641	1,381	22.8	8.2
– 가공	3,152	5,029	3,209	5,069	3,430	5,356	3,473	5,731	3,662	5,650	3412	5,645	△6.8	△0.1
▪ 수산식품	702	2,067	651	1,924	612	2,128	539	2,327	632	2,375	687	2,504	8.8	5.4

* '18년 황베트남 · 황미얀마 · 황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2만톤, 20.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 '19년 황미얀마·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0천톤, 2.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주요 수출품목 수출실적

(단위 : 천톤, 백만불, %)

구분		2018(A)		2019(B)		증감률(B/A)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전 체		4,815.4	9,300.3	4,740.2	9,529.2	△1.6	2.5
농림축산식품		4,183.4	6,925.7	4,052.7	7,025.7	△3.1	1.4
신 선		521.7	1,276.0	640.6	1,381.2	22.8	8.2
인삼류		7.5	187.9	10.6	210.3	40.7	11.9
김 치		28.2	97.5	29.6	105.0	5.1	7.7
채소류	소 계	98.4	279.3	169.4	324.2	72.1	16.1
	파프리카	31.9	92.3	35.3	91.5	10.7	△0.8
	채소종자	0.6	50.2	0.6	56.0	11.4	11.5
	딸 기	4.9	47.5	5.7	54.4	17.3	14.6
	토마토	7.3	16.8	7.5	17.5	2.2	4.0
과실류	소 계	130.5	310.9	129.7	351.5	△0.7	13.0
	배	32.9	80.1	30.7	83.3	△6.7	4.0
	유자차	15.2	41.2	13.1	38.5	△13.8	△6.6
	포 도	1.4	14.3	2.0	23.5	41.3	64.4
	단 감	5.7	7.6	5.5	8.3	△4.4	9.5
	사 과	2.9	7.6	2.9	7.0	0.8	△8.0
	감 귤	1.8	2.4	2.3	2.9	30.7	24.0
화훼류	소 계	2.2	18.7	1.9	17.2	△12.1	△8.2
	백 합	0.8	6.9	0.6	6.1	△21.8	△11.7
	장 미	0.4	1.6	0.4	1.7	1.4	7.5
	난 초	0.2	1.2	0.1	0.9	△45.7	△22.0
버섯류	소 계	19.8	49.6	22.0	54.4	11.0	9.6
	새송이버섯	6.6	23.5	7.6	26.3	15.3	11.9
	팽이버섯	12.0	21.5	13.1	22.7	9.2	5.8
곡 류	소 계	98.1	49.5	98.4	51.9	0.3	4.8
	쌀	52.0	24.3	51.8	24.7	△0.4	1.8
가금육	소 계	35.6	47.6	51.4	65.0	44.3	36.6
	닭고기	32.6	41.9	49.5	61.5	51.8	46.9
	오리고기	2.6	4.8	1.6	2.9	△38.6	△39.7
가 공		3,661.6	5,649.7	3,412.1	5,644.5	△6.8	△0.1
가공	라 면	116.0	413.1	137.3	467.0	18.4	13.0
	음 료	442.0	417.7	468.7	422.0	6.0	1.0
	맥 주	211.7	154.4	209.6	146.2	△1.0	△5.3
	비스킷	21.1	125.8	20.2	116.1	△4.4	△7.6
	쌀가공식품	48.6	89.3	54.6	108.4	12.5	21.5
	조제분유	8.7	99.2	8.7	95.9	△0.1	△3.3
	소 주	72.2	97.6	65.8	89.7	△8.8	△8
	고추장	16.7	36.8	17.7	37.7	5.7	2.3
	제3맥주	98.2	61.6	54.4	35.7	△44.6	△42.1
	생우유	9.5	16.6	10.8	19.0	14.5	14.4
	막걸리	12.8	12.4	12.8	12.2	△0.6	△1.8
기타 가공	궐 련	54.3	792.2	51.3	717.4	△5.6	△9.4
	커피조제품	75.1	265.7	76.0	270.3	1.2	1.7
	설 탕	299.9	140.2	286.0	119.8	△4.7	△14.5
수산식품		632.0	2,374.6	687.4	2,503.5	8.8	5.4
어류	참 치	216.9	617.7	239.0	571.6	10.2	△7.5
	삼 치	9.2	33.8	17.2	55.9	87.3	65.6
	넙 치	6.3	64.6	8.0	55.9	26.8	△13.4
	고등어	70.2	68.5	44.8	49.5	△36.2	△27.7
연체동물	굴	10.4	68.8	11.0	76.7	5.7	11.5
	전 복	2.4	62.9	2.2	61.5	△8.6	△2.2
	오징어	7.5	30.9	8.2	34.2	8.7	10.7
	바지락	8.8	27.8	10.0	29.8	14.2	7.5
해조류	김	22.1	525.6	27.0	579.2	22.0	10.2
	미 역	15.6	36.9	16.3	39.6	4.3	7.1

* '18년 화베트남·미얀마·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2만톤, 20.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 '19년 화미얀마·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0천톤, 2.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연도별 농림수산식품 수출입실적('87~'19)

(단위 : 백만$)

연도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A-B)
	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계(B)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1987	2,610	491	38	461	1,620	3,000	1,868	85	844	203	△390
1988	3,157	628	77	541	1,911	4,301	2,576	140	1,293	292	△1,144
1989	3,132	682	99	661	1,690	5,485	3,311	341	1,511	322	△2,353
1990	2,918	727	68	610	1,513	5,784	3,305	446	1,665	368	△2,866
1991	2,986	697	59	587	1,643	6,930	3,729	691	1,934	576	△3,944
1992	2,837	679	96	576	1,487	6,304	3,404	874	1,619	407	△3,467
1993	2,645	695	89	450	1,412	7,259	3,839	632	2,269	519	△4,614
1994	3,013	835	116	508	1,553	8,215	4,475	932	2,087	720	△5,202
1995	3,419	1,082	156	500	1,682	9,839	5,538	1,224	2,250	828	△6,420
1996	3,413	1,156	260	46404	1,593	11,875	6,867	1,240	2,749	1,020	△8,462
1997	3,347	1,188	320	345	1,494	11,255	6,285	1,324	2,595	1,051	△7,908
1998	2,999	1,002	389	244	1,364	6,972	4,664	756	967	584	△3,973
1999	3,198	1,003	408	269	1,518	8,564	4,681	1,245	1,478	1,159	△5,366
2000	3,012	1,134	121	255	1,503	9,819	5,105	1,676	1,653	1,385	△6,807
2001	2,852	1,252	118	210	1,272	10,079	5,325	1,466	1,657	1,631	△7,227
2002	2,801	1,375	99	167	1,161	11,472	5,702	1,949	1,934	1,887	△8,671

연도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A-B)
	계(A)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계(B)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2003	2,991	1,563	120	177	1,131	12,185	6,213	2,116	1,893	1,964	△9,194
2004	3,365	1,759	163	164	1,280	13,484	7,445	1,755	2,020	2,264	△10,119
2005	3,416	1,899	173	150	1,194	14,276	7,397	2,361	2,131	2,387	△10,860
2006	3,395	2,008	172	124	1,090	16,101	8,117	2,749	2,462	2,774	△12,706
2007	3,759	2,223	181	128	1,228	19,242	10,089	3,235	2,858	3,060	△15,483
2008	4,497	2,715	215	119	1,448	23,199	13,905	3,352	2,864	3,078	△18,702
2009	4,809	2,991	140	168	1,511	21,241	11,754	2,485	4,108	2,894	△16,432
2010	5,880	3,722	146	214	1,798	25,787	13,988	3,123	5,219	3,457	△19,907
2011	7,691	4,941	176	266	2,308	33,184	18,362	5,071	5,561	4,190	△25,493
2012	8,006	4,785	395	465	2,361	33,422	18,717	4,721	6,010	3,975	△25,416
2013	7,876	4,741	436	548	2,151	34,193	19,106	4,688	6,506	3,893	△26,317
2014	8,250	5,224	470	489	2,067	36,140	19,308	5,622	6,705	4,505	△27,890
2015	8,028	5,221	497	387	1,924	34,776	17,902	5,728	6,592	4,555	△26,748
2016	8,593	5,581	458	425	2,128	34,462	17,666	5,807	6,200	4,790	△25,870
2017	9,155	6,048	341	439	2,327	37,540	18,592	6,603	7,088	5,257	△25,933
2018	9,300	5,985	417	524	2,375	41,421	19,903	7,522	7,877	6,119	△32,121
2019	9,529	6,146	461	419	2,504	40,093	19,876	7,786	6,643	5,788	△30,564

* '18년 베트남·미얀마·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2만톤, 20.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 '19년 베미얀마·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0천톤, 2.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주요 수출국별 수출실적 ('97~'19)

(단위 : 천톤, 백만$)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아세안		EU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97년	717	1,836	239	201	65	177	235	351	260	222	40	70	192	167	57	167
'98년	730	1,679	259	175	72	178	120	174	259	180	90	75	244	125	139	238
'99년	724	2,100	197	149	79	201	40	61	187	143	65	69	333	150	71	135
'00년	666	1,822	271	202	92	224	51	79	197	147	46	73	352	151	50	105
'01년	640	1,563	221	164	107	254	90	131	211	141	36	64	367	183	67	109
'02년	632	1,414	207	178	121	292	106	137	202	115	53	82	294	166	68	101
'03년	613	1,398	246	237	120	304	108	160	188	114	43	79	283	170	77	133
'04년	654	1,564	298	338	129	366	110	180	193	135	52	91	219	171	62	133
'05년	621	1,455	267	340	129	369	110	208	176	133	96	123	247	219	59	127
'06년	555	1,311	246	336	130	378	105	216	177	159	49	110	298	267	47	106
'07년	528	1,220	375	452	137	401	117	251	186	154	51	121	334	344	67	162

구분	일본		중국		미국		러시아		홍콩		대만		아세안		EU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08년	574	1,438	376	539	158	449	123	293	169	172	66	126	331	451	117	246
’09년	688	1,580	415	565	176	467	101	226	178	196	86	155	487	521	134	260
‘10년	805	1,883	474	787	189	519	117	236	194	244	118	211	530	720	162	334
‘11년	1,074	2,374	695	1,380	194	600	118	243	201	306	100	261	527	1,032	146	366
‘12년	955	2,389	858	1,279	218	664	135	259	194	297	263	254	628	1,193	158	422
‘13년	1,033	2,102	901	1,318	232	740	133	255	218	383	189	263	658	1,307	196	402
‘14년	1,092	2,081	927	1,296	256	811	124	238	217	406	208	264	724	1,327	204	451
‘15년	1,006	1,832	1,067	1,361	271	859	64	141	218	399	155	291	830	1,328	180	462
‘16년	959	1,896	1,075	1,474	309	957	64	133	219	389	215	332	943	1,456	195	579
‘17년	985	2,085	917	1,360	302	1,026	75	173	217	393	251	377	987	1,618	236	670
‘18년	916	2,084	1,103	1,502	333	1,080	109	216	212	424	164	370	1,121	1,756	251	586
‘19년	908	2,158	977	1,629	359	1,171	120	205	206	413	168	367	1,125	1,812	250	560

* ‘18년 對베트남·對미얀마·對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2만톤, 20.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 ‘19년 對미얀마·라오스 쌀 무상원조 실적(1.0천톤, 2.0백만불)은 수출실적 집계대상에서 제외

1억불 이상 수출 품목 및 국가

• 1억불 이상 수출품목

(단위 : 백만$)

12품목				12품목						12품목		13
대두박	104.1	11품목		제3맥주	104.2					김치	105.0	12
오징어	116.4	조제분유	112.6	오징어	112.5	10품목		10품목		쌀가공식품	108.4	11
제3맥주	142.2	제3맥주	119.3	조제분유	121.5	맥주	112.4	비스킷	125.8	비스킷	116.1	10
비스킷	151.8	비스킷	149.9	인삼	133.5	비스킷	123.7	설탕	140.2	설탕	119.8	9
설탕	173.0	설탕	151.4	비스킷	152.3	인삼류	158.4	맥주	154.4	맥주	146.2	8
인삼	183.5	인삼	155.1	설탕	168.3	설탕	167.3	인삼류	187.9	인삼류	210.3	7
라면	208.5	라면	218.8	커피조제품	259.1	커피조제품	272.5	커피조제품	265.7	커피조제품	270.3	6
김	274.4	커피조제품	272.3	라면	290.4	음료	346.8	라면	413.1	음료	422.0	5
음료	281.7	음료	293.6	음료	334.4	라면	381.0	음료	417.7	라면	467.0	4
커피조제품	303.3	김	304.9	김	353.0	김	513.2	김	525.6	참치	571.6	3
참치	576.9	참치	489.6	참치	575.8	참치	625.5	참치	617.7	김	579.2	2
궐련	669.1	궐련	886.8	궐련	981.6	궐련	1,125.6	궐련	792.2	궐련	717.4	1
'14		'15		'16		'17		'18		'19		품목수

• 1억불 이상 수출국가

'13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태국	대만	러시아	UAE	인니	필리핀	싱가포르	호주	네덜란드	14개국			
'14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UAE	대만	러시아	태국	인니	필리핀	호주	싱가포르	캐나다	말련	15개국		
'15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UAE	대만	태국	호주	인니	필리핀	러시아	캐나다	싱가포르	말련			
'16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UAE	홍콩	대만	태국	인니	호주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말련	14개국			
'17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UAE	태국	홍콩	대만	인니	호주	러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아일랜드	말련	캐나다	네덜란드	17개국
'18	일본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태국	대만	인니	러시아	UAE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말련	캐나다	15개국		
'19 (억불)	일본 (21.6)	중국 (16.3)	미국 (11.7)	베트남 (6.7)	홍콩 (4.1)	태국 (4.0)	대만 (3.7)	러시아 (2.0)	인니 (2.0)	호주 (1.6)	필리핀 (1.6)	싱가포르 (1.5)	UAE (1.4)	캐나다 (1.3)	말련 (1.2)	캄보디아 (1.0)	16개국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

MEMO